

#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18. 12.



“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은 바로 **성실납세** 입니다.”

# 목차

CONTENTS



## I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5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6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3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38

## II 전자신고·납부 요령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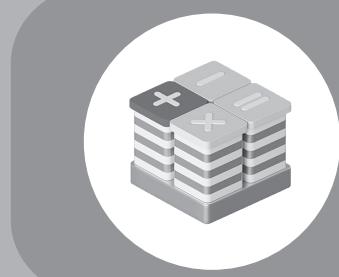
1. 전자신고 요령	66
2. 전자납부 요령	109
■ 흠판스 / 109    ■ 신용카드 / 113    ■ 모바일 / 117    ■ 수동납부서 / 118	

## III 자주 찾는 문답사례 123

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	124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36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40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51

## |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155

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156
2. 주요업종 신고서 작성사례	181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안내

## I.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1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 가.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간이과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1회 신고

-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개인 간이사업자)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18. 11. 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18. 7. 1.~ 2018. 11. 13.
  - 신고·납부기간 : 2018. 12.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를 2019. 1. 25.에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라.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19. 1. 1.(화)~ 2019. 1. 25.(금)
- 과세사업자(과·면세 겸업자 포함)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 개인)가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마.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

###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pm (4)$$

-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3) 예정신고 누락분
-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 (6) 예정신고 누락분
-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마

예정고지세액

바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아

가산세액

자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형장소·제조업 4/104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예정고지(신고) 세액

라

가산세액

마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상단 성실신고지원메뉴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화면중앙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화면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사업자구분	제출대상 서류
일반과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li> </ol> <p><b>[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li> <li>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li> <li>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li> <li>대손세액공제신고서</li> <li>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li> <li>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li> <li>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li> <li>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li> <li>전자화폐결제명세서 (전산작성분 첨부가능)</li> <li>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 시)</li> <li>건물관리명세서 (부동산 관리업)</li> <li>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li> <li>현금매출명세서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li> <li>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li> <li>사업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li> <li>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li> <li>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li> <li>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li> <li>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li> <li>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li> <li>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li> </ol>
간이과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li> </ol> <p><b>[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li> <li>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li> <li>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li> <li>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 시)</li> <li>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li> <li>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li> <li>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li> </ol>

## <유형별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품질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 현금매출명세서
◦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 건물관리명세서
◦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환급 신고 등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 세율 적용 대상	첨 부 서 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기공무역 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기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 인도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 발급명세서(전자 무역 기반 시설을 통하여 개 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기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 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 포함 작성)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외화입금증명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잔액표 또는 대금 청구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입증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서류(B/L)]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은 외화 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 발급명세서(전자 무역 기반 시설을 통하여 개 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행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 관장 발급 승선(탑승) 신고수리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영세율 적용 대상	첨부서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군남)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남원료증명서 또는 법24① 1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관광알선용역	일반여행입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 판매 기록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획득명세서</li> <li>·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li> </ul>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li> <li>·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li> </ul>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환급신청서, 농·어민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li> <li>·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li> </ul>	
외국인관광객 이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및 환급·송금명세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 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1) 전자신고

#### ○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자), 예정신고·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신고 방법 (구체적인 요령은 '전자신고·납부 요령'편 참조)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선택
  -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19. 1. 25.(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무실적자)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 홈택스 앱 설치 후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등)」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설명서) 홈택스 하단 「자료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 ○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19. 1. 1. ~ 2019. 1. 25. (매일 06:00 ~ 24: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2019. 1. 25.) 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부가가치세 납부 (구체적인 납부요령은 109쪽 참조)

### 1) 홀택스 전자납부

#### ○ 이용방법

- 홀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 (본인 명의의 계좌 필요)

구 분	방 법
홀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18.2기 확정신고: 세목(41.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 정보 입력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365일	00:30~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
	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2) 인터넷·ARS·ATM 납부

#### ○ 납부서를 준비합니다.

#### ○ 인터넷 납부

-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 확인서 발급

#### ○ ARS 납부

-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 (이하 인터넷과 동일)

####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 이용가능은행 : 우리·신한·국민·기업·경남·광주·수협·농협 등



### 3) 신용카드 납부 (금액 한도없음)

-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 금융결제원 지로통합 납부서비스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http://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국세납부 ⇒ 자진납부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정보 입력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 4) 모바일 납부

-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18.2기 확정신고: 세목(41.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 정보 입력
  - '납부내역' 또는 '타인세금 납부내역'에서 납부결과를 확인
-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
-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5)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납부(부가가치세, Step 2.신고내역)화면에서 출력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납부서를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2019.1.25)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①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③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에 한함)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⑤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에 한함)
- ⑧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⑨ ①, ②,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차. 부가가치세의 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밖의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카. 기한 후 신고

-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환급자도 가능)
  -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경감되니 가능한 한 조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20% 경감됩니다.

## 타.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가산세 부담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신고 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 자료로 구축되며,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자료, 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인프라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신고 자료를 비교·분석 후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 ■ 가산세 (2018년)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공급가액×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② 합계표의 미제출 · 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 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공급가액×0.5%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② 과소신고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무신고 일반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부당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40% 해당세액×20% 해당세액×40% 해당세액×10% 해당세액×40%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 세액 ×(3/10,000) ×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0.5%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제품가액 × 10% 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 × (3/10,000)× 일수 [한도 : 1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2018년)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2018년)

- (1) 적용분 (2),(3),(8),(9),(17),(18) 배제
- (2),(3),(8),(17),(18)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2),(4) 적용분 (3),(17),(18) 배제
- (3) 적용분 (17),(18) 배제
-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아래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내용이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확인

-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 되는 사례가 있음
-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유도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례에 대해 현금매출 비율이 동종 업체보다 낮고,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점검한 결과 추징한 사례가 있음

### 2. 과·면세 경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은

- 등심·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경영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 ◆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은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 분석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 3.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7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정벌적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해당 부가세액의 30%(공급가액의 3%)

### 4.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수입자동차 포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 뿐 아니라,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렌트비용 및 유지비용도 포함(불공제대상)됨

###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골프장 이용분, 공휴일 사용분, 백화점 잡화구입 등이 있어 점검한 결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 6. 과·면세 경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어우제조업체인 ○○수산은

-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 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동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백만원 추징

## 7.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자가 흠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명세서를 서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수령명세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이 있어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의 의)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흠택스에 등록(공인인증서)하면,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업자 및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방 법) 흠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카드발급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

## 8.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직전연도 과세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 신용 카드 매출분부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9.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매출액(6개월)	기본한도	음식점업('19년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이하	매출액의 55%	65%	
	1억초과 2억원이하		60%	
	2억원초과		45%	
법인사업자			50%	
			40%	

## 10.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도입되었으나,
  -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 공제가능금액 한도 =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 \* 공제액 = 공제가능금액 × 3/103(중고자동차는 10/110)

◆ 고철수집업체인 ○○자원은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하여.
- 노숙자·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11.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 금·구리·철 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하며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 되는 사례가 있음
  - \* 국고입금세액은 계좌개설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 1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음

## » 부가가치세 신고항목별 체크리스트

###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매출	국세청 흠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예 아니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예 아니오
	국세청 흠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예 아니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 신고 여부	예 아니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예 아니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예 아니오
매입	면세·간이·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고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폐자원·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세액 공제 등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확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 란에 예정신고 시 실제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공제 요건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고정자산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 (예외) 고정자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예 아니오																
공제 시기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고정자산의 매입인지 여부 *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확인	예 아니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검토			고정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별소비세</th> <th>부가가치세 공제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업용</td> <td>비과세</td> <td>여</td> </tr> <tr> <td>과 세</td> <td>여</td> </tr> <tr> <td rowspan="2">비영업용</td> <td>비과세</td> <td>여</td> </tr> <tr> <td>과 세</td> <td>부</td> </tr> <tr> <td>비사업용</td> <td>-</td> <td>부</td> </tr> </tbody> </table> <p>☞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p> <p>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p> <p>①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②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③ 전기승용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p>	구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사업용	비과세	여	과 세	여	비영업용	비과세	여	과 세	부	비사업용	-	부	예 아니오
구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사업용	비과세	여																		
	과 세	여																		
비영업용	비과세	여																		
	과 세	부																		
비사업용	-	부																		
토지관련 매입검토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외하였는지 여부 * (토지의 조성 등) 토지원가,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감정 평가비·컨설팅비용,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 및 택지조성 공사비용 등	예 아니오																
면세사업 관련 매입검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인지 여부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예 아니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인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는지 여부 *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과·면세 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	예 아니오																
제출 서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되었는지 여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 하였는지 여부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 요건 해당 여부	다음 (①~⑥) 업종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③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④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악면교정술, 피부관련시술 ⑤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자 본인 카드(타인 명의 제외)로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종업원, 가족 명의,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수취공제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신용카드 등 결제 승인된 후 취소건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 시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출 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일반과세자)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공제요건 해당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이과세자(음식업·제조업 제외)는 공제 불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시기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매입가액 계산 시 운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농산물 등을 수입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과·면세 경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되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율 · 한도율 검토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분에 대한 매입가액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과세유통장소</td> <td>4/104</td> </tr> <tr> <td rowspan="2">음식점업 기타</td> <td>8/108</td> </tr> <tr> <td>(과세표준 2억이하인 경우 9/109)</td> </tr> <tr> <td>법인사업자</td> <td>6/106</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과세유통장소	4/104	음식점업 기타	8/108	(과세표준 2억이하인 경우 9/109)	법인사업자	6/106							
구 분	공제율																	
과세유통장소	4/104																	
음식점업 기타	8/108																	
	(과세표준 2억이하인 경우 9/109)																	
법인사업자	6/106																	
<table border="1"> <tbody> <tr> <td>제조업</td> <td>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td> <td>4/104</td> </tr> <tr> <td></td> <td>법인사업자</td> <td>2/102</td> </tr> <tr> <td colspan="2">기타</td><td>2/102</td> </tr> </tbody> </table>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법인사업자	2/102	기타		2/10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법인사업자	2/102																
기타		2/102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과세표준 (6개월)</th> <th>기 본</th> <th>음식점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 사업자</td> <td>1억원 이하</td> <td rowspan="2">55%</td> <td>65%</td> </tr> <tr> <td>1억원 초과 2억원 이하</td> <td>60%</td> </tr> <tr> <td>2억원 초과</td> <td>45%</td> <td>50%</td> </tr> <tr> <td colspan="2">법인사업자</td><td colspan="2">40%</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표준 (6개월)	기 본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55%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구 분	과세표준 (6개월)	기 본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55%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table border="1"> <tbody> <tr> <td>재계산 여부</td> <td>매입 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면세사업 사용 또는 보관 중 불량·부패 등으로 그대로 처분한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td> </tr> </tbody> </table>		재계산 여부	매입 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면세사업 사용 또는 보관 중 불량·부패 등으로 그대로 처분한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재계산 여부	매입 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면세사업 사용 또는 보관 중 불량·부패 등으로 그대로 처분한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tbody> <tr> <td>제출서류</td> <td>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td> </tr> </tbody> </table>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적용대상 해당여부	<p>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특령 §110③)</p> <p>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p>	<span>예</span> <span>아니오</span>
적용대상 해당여부	<p>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p> <p>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② 간이과세자</p> <p>*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는 공제 가능</p>	<span>예</span> <span>아니오</span>
적용품목 해당여부	<p>취득 시 적용대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p> <p>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p> <p>(중고자동차)</p> <p>「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로 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p> <p>①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 부칙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 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② 조특령 §110①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 조특령 §110①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p> <p>*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p>	<span>예</span> <span>아니오</span>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공제율 · 한도율 검토	공제율과 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 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table border="1" data-bbox="348 403 1045 697">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3/103</td> </tr> <tr> <td>공제한도 (①-②)</td> <td>           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공제율	3/103	공제한도 (①-②)	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구 분	내 용						
공제율	3/103							
공제한도 (①-②)	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중고자동차) <table border="1" data-bbox="348 796 1045 894">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10/110</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공제율	10/110				
구 분	내 용							
공제율	10/110							
정산 여부	예정신고 또는 환급 신고 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였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출서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취득가액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고매입세액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공제 요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아닌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 시기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 대상	다음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li> <li>• 건설중인 자산</li> <li>•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계산대상에서 저장품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은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 세액	공제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공제세액을 계산하였는지 여부	
	구분	재고매입세액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부가가치율)
	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액 × (1-부가가치율)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110) × (1-부가가치율)
신고 여부	직접 제작·건설·신축한 감가상각자산	자산의 제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부가가치율)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건물·구축물은 1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50%	
승인 여부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승인 여부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공제 요건 해당 여부	<p>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p> <p>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금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p>	예 아니오
공제 시기 검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예 아니오
금액 검토	대손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text{대손세액} = \text{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times 10/110$	예 아니오
기한 검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제출 서류	<p>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p> <p>1.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2.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3. 사망·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 계획인가 결정문 등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6. 「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예 아니오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적합 여부							
안분 요건 해당 여부	과세·면세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통으로 사용·소비되었으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안분 계산 적정 여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면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순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안분계산 방법</th></tr> </thead> <tbody> <tr> <td>1호</td><td>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td></tr> <tr> <td>2호</td><td>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td></tr> <tr> <td>3호*</td><td>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td></tr> </tbody> </table>	구 분	안분계산 방법	1호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구 분	안분계산 방법								
1호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용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 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않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제 시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취득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에 공제 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정산 시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취득과 관련된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하는 때 정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토지·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적합* 여부
안분 계산 대상 여부	<p>사업용 부동산(건물·토지) 양도시 거래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p> <p>【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p> <p>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b>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b></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구 분	<p><b>《 건물 공급가액 계산방법 》</b></p> <p>*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순차로 적용하였는지 여부</p>	
<1단계> 감정가액 유무 여부	<p>「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p> <p>◆ 안분계산 방법</p> <p>총거래가액 × {(건물 등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건물 등 감정평가액))}</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기준시가 유무 여부	<p>토지·건물 모두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p> <p>◆ 안분계산 방법</p> <p>총거래가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건물 등 기준시가))}</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단계> 기준시가가 없거나 일부 있는 경우	<p>토지·건물 중 일부 감정평가가액이 있는지 여부</p> <p>◆ 안분계산 방법</p> <p>&lt;가&gt;총거래가액 × {(건물 또는 토지장부가액 ÷ (토지기준시가+건물 등 장부가액기준시가))}</p> <p>&lt;나&gt; '가'의 가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건물 등 기준시가))}</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단계> 국세청 고시방법	<p>오피스텔·상가(기준시가 일괄고시) 공급하였는지 여부</p> <p>◆ 안분계산 방법</p> <p>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p> <p>건축 중인 건물·토지 일괄 공급하였는지 여부</p> <p>◆ 안분계산 방법</p> <p>실지거래가액 × {(제99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에 따른 토지 기준시가+건물 등의 기준시가))}</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 (1)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3)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3)
- (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소득령 §211의2)
- (6)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 (부가법 §3의2 등)
- (7)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② (부가법 §10)
- (8)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 (9)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부가령 §26)
- (10)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부가법 §17)
- (11)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부가령 §35)
- (12)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37)
- (13)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부가령 §40)
- (14)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부가령 §46)
- (1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령 §68)
- (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부가령 §68)
-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부가령 §68)
- (18)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가법 §34의2)
-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 (부가법 §35)
- (20) 신규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부가법 §39)
- (21)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부가법 §52)
- (22)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부가령 §81)
- (23)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법 §42)
- (2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부가법 §60)
- (25)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 (조특령 §106)
- (2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조특법 §106의4)
- (27)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조특법 §106의4)
- (2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조특법 §106의7)
- (2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조특법 §106의10)
- (30)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조특법 §107의2)
- (3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3)
- (3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08)
- (3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6)
- (34) 2018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 (1)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p> <p>*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p> <p>◇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p>	<p><input type="checkbox"/>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p> <p>◇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p>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p>*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p> <p>○ (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업 종</th><th>과세표준 (연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음식점업 (개인)</td><td>4억 원 이하 4억 원 초과</td><td>9/109 8/108</td></tr> <tr> <td>음식점업(법인)</td><td></td><td>6/106</td></tr> <tr> <td>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형장소</td><td></td><td>4/104</td></tr> <tr> <td>기 타</td><td></td><td>2/102</td></tr> </tbody> </table>	업 종	과세표준 (연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4억 원 이하 4억 원 초과	9/109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형장소		4/104	기 타		2/102	○ (좌 동)																					
업 종	과세표준 (연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4억 원 이하 4억 원 초과	9/109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형장소		4/104																																			
기 타		2/102																																			
<p>○ (공제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표준 (연간)</th><th>기본</th><th>음식점업 ('18년 말까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 사업자</td><td>2억 원 이하</td><td>50%</td><td>60%</td></tr> <tr> <td>2~4억 원</td><td></td><td>55%</td></tr> <tr> <td>4억 원 초과</td><td>40%</td><td>45%</td></tr> <tr> <td>법인사업자</td><td>30%('18년 말까지 35%)</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표준 (연간)	기본	음식점업 ('18년 말까지)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하	50%	60%	2~4억 원		55%	4억 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 말까지 3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표준 (연간)</th><th>기본</th><th>음식점업</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 사업자</td><td>2억 원 이하</td><td>55%</td><td>65%</td></tr> <tr> <td>2~4억 원</td><td></td><td>60%</td></tr> <tr> <td>4억 원 초과</td><td>45%</td><td>50%</td></tr> <tr> <td>법인사업자</td><td></td><td>4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표준 (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하	55%	65%	2~4억 원		60%	4억 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구 분	과세표준 (연간)	기본	음식점업 ('18년 말까지)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하	50%	60%																																		
	2~4억 원		55%																																		
	4억 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 말까지 35%)																																				
구 분	과세표준 (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하	55%	65%																																		
	2~4억 원		60%																																		
	4억 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 적용시기 : 2018.9.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p> <p>○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p> <p>*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p> <p>○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p> <p>○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p>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p> <p>○(좌 동)</p> <p>○ 공제한도 확대</p> <p>- 연간 500만원 → 1,000만원</p> <p>○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p> <p>- '20.12.31.</p>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li> </ul> </li> <li><input type="radio"/>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li> <li><input type="radio"/> 피부미용업</li> <li><input type="radio"/>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li> <li><input type="radio"/>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li> <li><input type="radio"/> 유통주점 등 음식·숙박업</li> <li><input type="radio"/>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li> <li><input type="radio"/>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 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li> <li><input type="radio"/>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약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li> </ul>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li> <li>○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li> <li>○ (의무발급 기간) 1.1. ~ 12.31.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경영 사업자</li> <li>· (의무발급 기간) 7.1. ~ 6.3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li> <li>○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li> <li>○ (의무발급 기간) 7.1.~다음해 6.30.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li> <li>· (좌 동)</li> </ul> </li> </ul>

- 적용시기 :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①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8조·제10조의2 제1항
-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규정 보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물적납세의무 부과 대상인 신탁재산) 신탁법 및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재산 등을 포함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 하는 신탁계약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인적책임 배제)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다음의 인적책임을 배제(「국세 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input type="radio"/>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input type="radio"/>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공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7)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②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재화공급의 특례</li> <li><input type="radio"/>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신탁관련 특례 신설</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li> <li><input type="radio"/>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li> <li><input type="radio"/>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신탁관련 규정 추가</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8)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로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개정취지 :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로 정기예금 이자율 : 1.6%	<input type="checkbox"/>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1.8%

- 적용시기 : 2018.3.19(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input type="radio"/> 다만, 다음의 경우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radio"/> 무상임대 시 비과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li> </ul>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개정취지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li> <li><input type="radio"/> 대가를 받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p style="margin-left: 20px;">* 예규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허용(재부가-634, 2007.9.3.)</p> </li> <li><input type="radio"/>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li> <li><input type="radio"/>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li> <li>-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li> <li><input type="radio"/>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기존 예규 법령화)</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li> <li><input type="radio"/> -</li> <li><input type="radio"/>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p style="margin-left: 20px;">*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p> </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개정취지 :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input type="radio"/>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2)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개정취지 :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 <input type="radio"/> 시내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일반 철도 등  <input type="radio"/>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는 2018.3.31.까지 면세	<input type="checkbox"/> 일반고속버스 면세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는 2020.12. 31.까지 면세

### (13)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개정취지 : 「외국환거래법」 개정 반영, 유사 용역간 과세형평 감안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li> <li><input type="radio"/>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li> <li><input type="radio"/>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li> <li><input type="radio"/>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 포함)           <p style="margin-left: 20px;">&lt;추 가&gt;</p> </li> <li><input type="radio"/>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보증업 등           <p style="margin-left: 20px;">&lt;추 가&gt;</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사업의 공제대리</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li> </ul>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4)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개정취지 :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 감안, 민간투자사업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li> <li><input type="radio"/>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li> <li>- 국가 등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면세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과세</li> <li>- (좌 동)</li> <li>- 국가 등이 BTL-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 운영권</li> </ul> </li> </ul> </li> </ul>

- 적용시기
  - (군 골프장 등 과세) 20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이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면세) 2018.2.1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input type="radio"/> 법인 <input type="radio"/>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개인

- 적용시기 : 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 보호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통지 <input type="radio"/>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통지 보완 <input type="radio"/> (좌 동)  -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특례</li> <li><input type="radio"/> 다음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li> <li>-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발급특례 확대</li> <li><input type="radio"/>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li> </ul> </li> <li><input type="radio"/> (좌 동)</li> </ul>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8)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개정취지 :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li> <li><input type="radio"/>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발행 허용 사유 확대</li> <li><input type="radio"/>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li> </ul> </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개정취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li> <li><input type="radio"/>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lt;추 가&gt;</li> <li>-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등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 그 밖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li> </ul> </li> </ul> </li> </ul>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li> </ul> </li> <li><input type="radio"/>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li> </ul> </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개정취지 :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li> <li><input type="radio"/> (범위) 사업개시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li> </ul>	<input type="checkbox"/>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좌 동)</li> <li><input type="radio"/> (범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개정취지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li> </ul> </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2)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개정취지 :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li> <li>○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과세사업 포함)을 경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li> <li>○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 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math display="block">\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면세공급가액등}}{\text{총공급가액}}</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 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등의 합계액</li> <li>- 면세공급가액들은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li> <li>- 면세공급가액들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li> </ul>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3)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개정취지 :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input type="checkbox"/>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input type="radio"/>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업 종</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음식점(개인)</td> <td>8/108</td> </tr> <tr> <td>음식점(법인)</td> <td>6/106</td> </tr> <tr> <td>과세유증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td> <td>4/104</td> </tr> <tr> <td>기 타</td> <td>2/102</td> </tr> </tbody> </table>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증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input type="radio"/>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간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rightarrow 9/109$ 로 2년간(2018~2019년) 상향 조정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증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개정취지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 3%
<input type="checkbox"/>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 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 1%	<input type="checkbox"/>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 1% → 2%
<input type="checkbox"/>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개정취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에 따라 조문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input type="radio"/> 「소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조문정비 <input type="radio"/>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만, 소방감리용역은 제외

- 적용시기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8항·제106조의9 제7항
- 개정취지 : 가산세 제도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 가산세 기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p style="margin-left: 20px;">&lt;추 가&gt;</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좌 동)</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27)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1항·제106조의9 제11항
- 개정취지 :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 (공급받는 자)</li> </ul> </li> </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 (2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개정취지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p> <p>○ (경감율) 95%</p> <p>-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 (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 하는 것만 규정</p>	<p><input type="checkbox"/> 경감율 확대 등</p> <p>○ (경감율) 99%</p> <p>- (좌 동)</p> <p>-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p> <p>○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p>

- 적용시기

- (경감율 확대 등)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경감세액 지급)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2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li> <li><input type="radio"/> (대상업종) 일반유통주점업 및 무도유통주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li> </ul> </li> </ul> </li> <li><input type="radio"/>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li> <li><input type="radio"/>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li> </ul> </li> <li><input type="radio"/>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li> <li><input type="radio"/>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1%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li> </ul> </li> <li><input type="radio"/> (적용기간) 2019.1.1.~2021.12.31.(3년간)</li> </ul> </li> </ul>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0)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입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개정취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lt;제 도 입*&gt;</p> <p style="text-align: center;">* 2014.4월 ~ 2015.3월 시행</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p> <p><input type="radio"/>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p> <p><input type="radio"/> (특례적용호텔)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p> <p><input type="radio"/> (적용기간) 2018.1.1.~2018.12.31.(1년간)</p>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3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개정취지 : 의료관광 유치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p> <p><input type="radio"/>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p> <p><input type="radi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p> <p><input type="radio"/>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p> <p><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17.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18.12.31.</p>



### (3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개정취지 :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li><li><input type="radio"/>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li><li><input type="radio"/>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li><li><input type="radio"/> (공제율) 9/109</li><li><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18.12.31.</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li><li><input type="radio"/> (좌 동)</li><li><input type="radio"/> (좌 동)</li><li><input type="radio"/> (공제율) 10/110</li><li><input type="radio"/> (좌 동)</li></ul>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3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 관련법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2항
-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객 관광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요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액물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li></ul></li><li><input type="radio"/> (1회 한도) 20만원 미만</li><li><input type="radio"/> (1인 한도) 100만원 이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즉시환급 한도 상향</li><li><input type="radio"/> (1회 한도) 30만원 미만</li><li><input type="radio"/> (좌 동)</li></ul>

- 적용시기 :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34) 2018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구 분	항 목	관련조문	연장기한
영세율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어업용기자재	조특법 §105①제5·6호	'20.12.31
면 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조특법 §106①제4호의2	'20.12.31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조특법 §106①제5호	'20.12.31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	조특법 §106①제9호의2	'20.12.31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조특법 §106①제9호의3	'20.12.3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조특법 §106①제11호	'20.12.31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조특법 §106①제12호	'20.12.31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조특법 §106②제9호	'20.12.31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조특법 §121의23	'19.12.31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조특법 §121의25	'20.12.31





## 전자 신고·납부 요령

### 1.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PC)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모바일 홈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
- 증빙서류 제출방법(영세율 첨부서류 등)

### 2. 전자납부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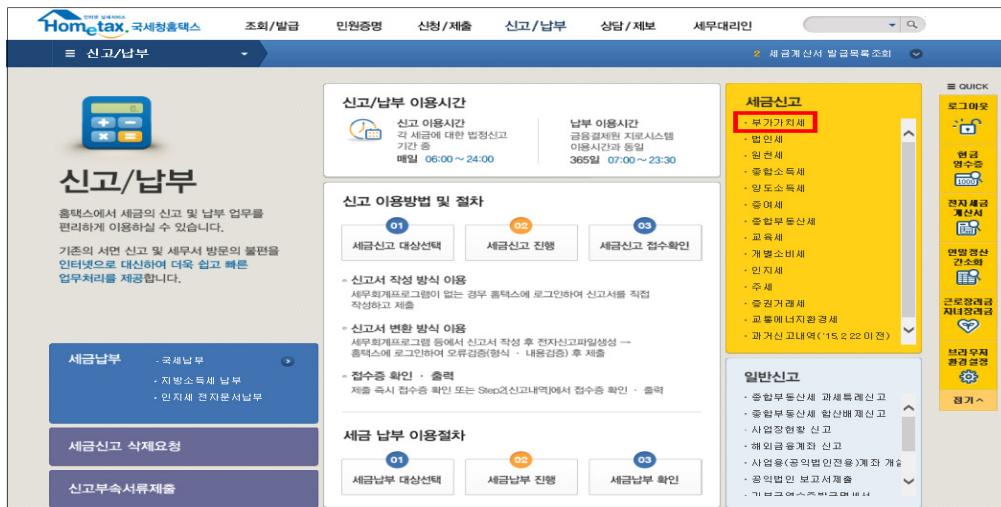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수동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방법

## 1 전자신고 요령

### 가. '홈택스'(PC)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1) '홈택스'(PC) 로그인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C) login interface. The main menu at the top includes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and '세무대리인'. Below the menu, a sub-menu for '신고/납부' is expanded. The '신고/납부' section contains a '신고/납부' icon and text: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d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To the right of this section are two large boxes: '신고/납부 이용시간' and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The '신고/납부 이용시간' box shows '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and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365일 07:00 ~ 23:30'. The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box shows three steps: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02 세금신고 진행,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To the right of these boxes is a sidebar titled '세금신고' with a red box around '부가가치세'. The sidebar lists various tax types: '법인세', '일반세', '종합소득세', '영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개별소비세', '민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and '과거신고내역('15.2.22 이전)'. Below this is another sidebar titled '일반신고' with a red box around '부가가치세 신고'. This sidebar lists: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사업용(공익법·인간용)제작 개설',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and '기타부록제출'. On the far right of the sidebar is a '퀵메뉴' (Quick Menu) with icons for '로그인', '영수증', '전자문서', '연결경상', '간소화', '국세청예금', '세무대리인', '부과자', '환경설정', and '접기'.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자료, 신고 참고 사항을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부가가치세 신고' (VAT Declaration) service page. At the top, there are three buttons: '신고내내 동영상 보기' (Watch Video), '전자신고 이용방법 보기' (View VAT Declaration Usage Method), and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VAT Declaration Assistance Service),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se buttons are several service categories: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and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with icons and labels: '일반과세자' (General Taxpayers) with categories: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월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간이과세자' (Simplified Taxpayers) with categories: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작전기와 계약등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타/증빙서류' (Others/Documentation) with categories: 대리납부신고, 증빙서류 제출; and '카드사 대리납부' (Card Payment Agent Declaration) with categories: 정기신고 (확정/예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 사업자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①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결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②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등급)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문집별신고)		
③ 기타/증빙서류		대리납부신고	증빙서류 제출			
④ 카드사 대리납부		정기신고 (확정/예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 〈참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자신고 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담 시 해결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하도록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①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결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②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등급)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문집별신고)		
③ 기타/증빙서류		대리납부신고	증빙서류 제출			
④ 카드사 대리납부		정기신고 (확정/예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 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

- 정기신고(예정/확정) : 예정·확정신고 시 선택
- 조기환급 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고 시 선택
- 기한 후 신고 : 예정·확정신고기간 후 선택
- 수정신고 : 예정·확정신고 분 수정신고 시 선택 (조기환급분은 불가)
- 경정청구 : 예정·확정신고 분 경정청구 시 선택 (조기환급분은 불가)
- 대리납부 신고 : 대리납부 신고 시 선택
- 증빙서류 제출 : 신고 증빙서류를 PDF, 이미지 파일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b>▣ 일반과세자</b>				
<a href="#">정기신고 (확정/예정)</a>	<a href="#">조기환급신고 (월별)</a>	<a href="#">기한후신고</a>	<a href="#">수정신고</a>	<a href="#">경정청구</a>
<a href="#">정기신고 (폐업확정)</a>	<a href="#">폐일별환신고 (회계프로그램)</a>			
<b>▣ 간이과세자</b>				
<a href="#">정기신고 (확정/예정)</a>	<a href="#">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 기와 계약등)</a>	<a href="#">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a>	<a href="#">수정신고</a>	<a href="#">경정청구</a>
<a href="#">정기신고 (폐업확정)</a>	<a href="#">폐일별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a>	<a href="#">정기신고 (문 담당신고)</a>		
<b>▣ 기타/증빙서류</b>				
<a href="#">대리납부신고</a>	<a href="#">증빙서류 제출</a>			
<b>▣ 카드사 대리납부</b>				
<a href="#">정기신고 (확정/예정)</a>	<a href="#">수정신고</a>	<a href="#">경정청구</a>		

- 사업장이 여럿 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는 정정(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의 확정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기간은 1.1부터 1.25까지입니다.

- 위 메뉴의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① 부동산임대 사업자(간이)로서

②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직전기 신고서 존재)하며

③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 외 다른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는 5년 이내 가능

### 3) 일반과세자 전자신고 작성방법

-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조회됨
  - 단일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펼침 메뉴접기

0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02.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03. 신고서제출

마리보기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신고구분 2018 년 2기 예정 확인

신고대상기간 2018-07-01 ~ 2018-12-31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해 이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자

● 사업자세부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번호 주소검색 ※ 주소 정정 필요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암증코드 조회 업태 종목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신고

저장 후 다음이동



-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히 신고 종료
- 사업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선택

- \* 영세율 관련 고시 서식을 전자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
- \* 고정자산 매입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반드시 선택

**● 입력서식 선택**

•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신 후, 신고서 제출까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 체크 표시를 하면 왼쪽에 입력할 서식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 주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 “경감·공제내역/가산세/예정 고지(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화면하단의 선택사항을 체크하셔야 신고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서식 도움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기타 제출서류(영세율 제외)	기타 제출서류(영세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동물진료용역 매출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매출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영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기업 수입 납부유예)	<input type="checkbox"/> 건물 관리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수출실적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합계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현황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내국신증장·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전자화폐결제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도선 고서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input type="checkbox"/> 현금 매출 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불통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관세 환급금 등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증급가액 일람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매출분	<input type="checkbox"/> 광장 동계 온라인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 누락분	<input type="checkbox"/>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별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세표준명세	<input type="checkbox"/> 재물 등 폐자원 및 중고 차량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단위 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input type="checkbox"/> 면세수입금액	<input type="checkbox"/> 광장 사업전환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물품 판매,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input type="checkbox"/>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화획득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철별 판매액 합계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 면세 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 누락분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 즉시 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제매입세액		
	<input type="checkbox"/>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처 분 받은 세액)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정고지세액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수자의 대리 납부 기납부세액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미환급세액	<input type="checkbox"/> 매입자 납부 특례기납부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신고공제세액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 신고서식을 선택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0 II. 전자 신고·납부 요령

-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속서류를 작성
  - \*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
  - \* 가산세 입력화면은 '뒷쪽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

**● 신고내용(앞쪽)**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내용을 입력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의 선택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기]는 '신고서입력완료' 버튼을 누르신 후 보서와 작성된 첨부서류내용이 신고서반영되어 보여집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경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 100 0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0 / 100 0
합계	(9) 0	작성하기	0 / 100 0

**● 과세표준명세**

금액	작성하기	※ 과세표준금액을 입증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0	작성하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 10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0	작성하기	0 / 10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경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 100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 10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0	작성하기	0 / 100 0
합계 (10)-(10-1)+(11)+(12)+(13)+(14)	(15) 0	작성하기	0 / 10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 100 0
차감계 (15) - (16)	(17) 0	작성하기	0 / 100 0

납부(한급)세액 (매출세액 ⑨ - 매입세액 ⑯)

**● 경감 · 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0	작성하기	0 / 10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 100 0
합계	(20) 0	작성하기	0 / 100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납부(한급) 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예정신고 미관금 세액	(21)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고지세액	(22) 0	작성하기	0 / 100 0
사업장수자의 대리납부 가납부세액	(23) 0	도용발	0 / 100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0	도용발	0 / 100 0
가산세액계	(25) 0	작성하기	0 / 100 0
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한급받을 세액) (⑨-⑯-⑯-⑯-⑯-⑯+⑯)	(26) 0	작성하기	0 / 100 0

※ 신고대상기간 중에 예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부어지고 예정신고시 일반한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이한급세액이 있음 경우 그 금액을 보여줍니다.  
 ※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이한급세액은 동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국세한급금 계좌신고(한급세액이 전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선택	계좌번호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	------	---------------------

**● 면세사업 수입금액**

금액	작성하기	※ 면세매출액을 입증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항목	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82) 0
계산서 수취금액	(83) 0

이전 **신고서 입력완료**

○ 신고내용(뒷쪽)에서는 기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산세는 직접 입력

● 신고내용(뒤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li> <li>신고내용 입력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의 선택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합니다.</li> <li>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매출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32)	0	10 / 100	0
과세 기타	(33)	0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34)	0	0 / 100	
영세율 기타	(35)	0	0 / 100	
합계	(36)	0		0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매입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	(37)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0		0
합계	(39)	0		0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40)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41)	0		0
의제매입세액	(42)	0		0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43)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0
재고매입세액	(45)			0
변제대손세액	(46)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0
합계	(48)	0		0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0		0
공동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0		0
대손처분분은 세액	(51)	0		0
합계	(52)	0		0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53)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0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5)		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0	
기타	(57)		0	
합계	(58)		0	
● 가산세 명세				
(단위: 원) 도움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미등록 등	(59)	0	1 / 100	0
(세금계산서) 자연발급 등	(60)	0	1 / 100	0
(세금계산서) 자연수취	(61)	0	5 / 1000	0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62)	0	2 / 100	0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 자연전송	(63)	0	5 / 1000	0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 미전송	(64)	0	1 / 100	0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0	5 / 1000	0
(세금계산서합계표) 자연제출	(66)	0	3 / 1000	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7)	0		0
(신고 불성실) 무신고(부당)	(68)	0		0
(신고 불성실) 파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0		0
(신고 불성실) 파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0		0
납부 불성실	(71)	0		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0	5 / 1,000	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0	1 / 100	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0	1 / 100	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0		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자연입금	(76)	0		0
합계	(77)			0

이전 신고서 입력 완료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용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0
영세용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 100 0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0 / 100 0
합계	(9)	0	작성하기	0 / 100 0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하일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신고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시, 반드시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③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④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아래 세부명세 입력시 자동합계됨

직접 입력

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과세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과세분 <input type="radio"/> 영세율분 <input type="radio"/> 매입자발행분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상호(법인명)	
매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원	주류	비주류업체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주류
1	출01(1/1)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 삭제

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원	원

이전

입력완료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작성하기

(단위: 원)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0
영세로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감감		작성하기	0
합계	(9) 0		0

클릭시 작성화면으로 이동

(단위: 원)			
● 과세분			
※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0	세액(10/100)	0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0	세액(10/100)	0
※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금액	0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단위: 원)			
● 영세율분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6) 영세율 기타 매출 분 금액	0	세액(0/100)	0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도움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li> <li>※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li> <li>• 결제대행(택시, 이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단위: 원)			
구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면세매출분			
봉사료			

조회하여 입력

※ 발행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내역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이전

입력완료

- 신고서 앞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하여도 작성 가능함

(단위: 원)																																			
<p><b>① 경감 · 공제세액</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세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8)</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작성하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0 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9)</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작성하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0 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0)</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0 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 ·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작성하기	0 원	합계	(20)	@	0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작성하기	0 원																																
합계	(20)	@	0 원																																
<p><b>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b></p> <p>·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td> <td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작성하기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작성하기"/></td> </tr> <tr> <td style="padding: 5px;">전자화폐 매출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작성하기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작성하기"/></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증거표, 전자화폐계정서를 작성하면 공제금액에 자동 반영하여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공제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0 원</td> </tr> <tr> <td style="padding: 5px;">공제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0 원</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공제 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0 원</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1. 일반납세자 : 공제 즐기기</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2. 개인납세자 /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3. 개인납세자 / 일반과세자 : 최근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직원번호 등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 금액은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금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 · 대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width: 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td> </tr> </tbody> </table>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	작성하기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전자화폐 매출금액	작성하기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증거표, 전자화폐계정서를 작성하면 공제금액에 자동 반영하여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0 원	공제세액	0 원	기공제 세액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1. 일반납세자 : 공제 즐기기		2. 개인납세자 /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 일반과세자 : 최근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직원번호 등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 금액은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금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 · 대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width: 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	작성하기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전자화폐 매출금액	작성하기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작성하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증거표, 전자화폐계정서를 작성하면 공제금액에 자동 반영하여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0 원																																		
공제세액	0 원																																		
기공제 세액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1. 일반납세자 : 공제 즐기기																																			
2. 개인납세자 /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 일반과세자 : 최근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직원번호 등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 금액은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금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 · 대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width: 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p><b>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b></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도움말</p> <p>·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p> <p>※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p> <p>· 결제대행(택시, 이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px;">(단위: 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구분</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신용 · 직불 · 기영식 선불카드</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현금영수증</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합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과세매출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면세매출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봉사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금액 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내역 조회"/>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현금영수증 매출총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내역 조회"/> </td> </tr> </tbody> </table>				(단위: 원)				구분	신용 · 직불 · 기영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면세매출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봉사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금액 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내역 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현금영수증 매출총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내역 조회"/>			
(단위: 원)																																			
구분	신용 · 직불 · 기영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면세매출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봉사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 height: 100%;" type="button" value="조회하여 입력"/>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금액 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내역 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현금영수증 매출총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발행내역 조회"/>																																			
<p><b>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b></p> <p>※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단위: 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세금계산서 발급금액</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계산서 발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조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조회"/></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width: 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td> </tr> </tbody> </table>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width: 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width: 5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px; width: 100px; height: 20px;"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 ○ 기타매출 작성하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를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를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작성하기		0
합계	(9) 0		0	0

● 기타매출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과세분과 영세를 적용분을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임대입자 작성	작성하기	금액	0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합계 **0 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분

※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3)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 분 금액	123,445	세액(10/100)	12,344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0	세액(10/100)	0

**순수 현금매출액을 작성**

※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위: 원)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금액	0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 영세율분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영세를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6)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0	세액(0/100)	0
------------------	---	-----------	---

이전

입력완료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임대사업자)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도움말
변환페이지이동

전산매체 제출용으로 생성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부동산소재지 주소검색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② 임대수입금액 합계** (단위: 원)

구분	임대차 계약내용 보증금	임대차 계약내용 월 임대료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합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보증금 미자(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월 임대료(계)
합계					

**③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직전 기 신고 임차인 조회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신일 입력 도움말 | 총, 면적 입력요령

※ [임차인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직전기 임대사업명세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임차인조회</span>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성명(상호)	<input type="text"/>
경신일	<input type="text"/>				
입주일	<input type="text"/>				
		퇴거일	<input type="text"/>		

※ 과세기간 중 계약이 경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  
퇴거일(경신일 전일) 경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경신일, 입주일, 퇴거일 미입력시 보증금미자와 월임대료는 해당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임차인이 XXXX년 XX월 XX일 ~ XXXX년 XX월 XX일 중 입주 또는 퇴거한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퇴거일을  
일자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자수정

등	<input type="text"/>	총	<input type="text"/>	호수	<input type="text"/>	면적	<input type="text"/>
---	----------------------	---	----------------------	----	----------------------	----	----------------------

면적, 총 등 임대정보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입력 시 가산세 검토 대상)  
면적 입력요령: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공용면적 포함)  
총 입력요령: 임차인이 사용하는 모든 총 기재

직접 입력 후 버튼 클릭

※ 할인 조기환급신고가 있는 경우,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보증금 미자는 직접 계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input type="text"/> 원	월임대료	<input type="text"/> 원
임대수입금액	보증금미자	<input type="text"/> 원	월임대로합계	<input type="text"/> 원

※ 임대사업명세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보증금미자 계산 공식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일수 × 1.8% (미자율)) / 365 (366)  
월세 : 부기 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④ 임대사업명세** 단위 (면적: m<sup>2</sup>, 금액: 원)

일련 번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임차인 상호(성명)	입주일	경신일	퇴거일	등	총
◀						▶	
1	총 1/1						

임차인 별 수입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을 정경하려면 삭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내용삭제

이전 저정 후 다음이동

## ○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기

\*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0
합계	(9) 0		⑩	0

● 과세표준명세
클릭 시 작성화면으로 이동
(단위: 원)

금액
작성하기
※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명세

- 업종별 과세표준명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0 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

업종코드	업태	종목	금액
7012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코드조회		
701201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0

※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조회하여 추가 또는 정정 하십시오.  
 기타(수익금액제외)란에는 부기기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 고정자산 매입은 일반매입 작성 후 고정자산으로 분류

● 매입세액		금액	세율	세액	(단위: 원)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예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15)	0		0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17)	0		0	
			⑥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상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시, 반드시 기원금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일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과세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아래 세부명세 입력시 자동 합계됨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직접 입력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매입처가 등입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일 11일

과세구분	● 과세분 ○ 영세율분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매수	<input type="text"/> 건 공급가액 <input type="text"/> 원
세액	<input type="text"/> 원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전

-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입력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됨

① 매입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0	작성하기		0
예정신고 누락분	0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0	작성하기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0	@		0

②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③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신고대상기간 중 건축·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단위: 원)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0	0	0
건축·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메인 화면에서 "부속서류제출하기"를 활용하십시오.

④ 합계

구분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0	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이전
입력완료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①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p>•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p>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0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고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변제대손세액	작성하기	0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작성하기	0	0
합계	0	0	0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단위: 원)	
<p>• 전산매체 제출용으로 생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변환페이지 이동"/>			
<p>•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p> <p>•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화면하단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선용자카드 항목에만 입력하여야 합니다.</p> <p>• 범인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이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 건수, 공급가액, 세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세 제출 불필요)</p> <p>• 미리보기는 500만 원 제공됩니다.</p> <p>• 경기신고분 제제출, 수령신고, 경경경구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이 2,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파일 제출건은 200건 미만) 이미 제출된 내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 작성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③ 가맹점 정보		(단위: 원)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10px;" type="text"/> 카드회원번호		<small>※ * - 없이 입력하십시오.</small>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10px;" type="text"/>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 건수	건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10px;" type="text"/> 공급가액		세액	원
<small>※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small>			
<input type="button" value="입력 내용추가"/>			

④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input type="checkbox"/> 카드회원 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거래 건수	<input type="checkbox"/> 공급가액	<input type="checkbox"/> 세액
<small>1 총 0 건 (1/1)</small>					
<small>※ 거래사할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small>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내용삭제"/>					

⑤ 합계		(단위: 원)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기타 신용카드			

⑥ 위 합계 금액을 면세분매입금액, 면세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면세분 일반매입			
면세분 고정자산매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 일반매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 고정자산매입			

⑦ 이전		(단위: 원)	
		<input type="button" value="입력완료"/>	

## - 의제매입신고서 작성하기

\* 하단 파란색 박스 부분은 확정신고시에만 작성

**① 그 밖의 과세매입세액 명세**

- 그 밖의 과세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구분**      **금액**      **세액**

선풍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0  
 선풍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0  
 의제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제작한 때 자본을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고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변제 대출세액      **작성하기**      0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세세액      **작성하기**      0      0  
 합계      **작성하기**      0      0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도움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 매입가액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 예정신고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하여 입력하십시오.

**③ 농·야면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제조업자만 작성**

\* 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 견수      \* 품명  
 \* 수량      \* 매입가액

\* 신고내역을 추가하여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④ 농·야면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견수      품명      수량      **매입가액**

\* 거래사정기재내용을 삭제하여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⑤ 면세농수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분**      **\* 매입처수**      **\* 견수**      **\* 매입가액**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조회하기**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조회하기**

농·야면 등으로부터      매입분      **조회하기**

합계      **조회하기**

\* 합계에 따라 미리 지정한 공제율이 나타납니다.

**⑥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하여 공제(납부)할 세액이 신고서(42)번 세액에 반영됩니다.

**확정신고시에만 작성**

**⑦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단위:원)

과세표준	예정분	확정분	합계
대상액 한도계산	<b>한도율</b>	<b>한도액</b>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 금액	

**⑧ [한도율]**

- 법인사업자 : 40/100  
 - 개인사업자 : 45/100(과세표준합계가 2억 초과인 경우)  
 50/100(음식업자인 경우 + 과세표준합계가 2억 초과인 경우)  
 55/100(과세표준합계가 2억 이하인 경우)  
 60/100(음식업자인 경우 + 과세표준합계가 1억 초과 2억 이하인 경우)  
 65/100(음식업자인 경우 + 과세표준합계가 1억 이하인 경우)

**면세농산물에 관련된 과세매출액 입력**

## -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신고서 작성하기

**❶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기초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 이 경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공제(납부)할 세액이 신고서(42)번 세액에 반영됩니다.

공제 적용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2기 확정신고시에만 작성			(단위: 원)	
	제1기	제2기	합계	
과세 표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대상액 한도계산	한도율		한도액	
	<input checked="" type="radio"/> 30%	<input type="radio"/> 40%	<input type="radio"/> 50%	<input type="text"/>
1억년 매입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제대상 금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❷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단위: 원)

공제대상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2/102	<input type="radio"/> 4/10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미 공제받은 세액	<input type="text"/>		총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제(납부)할 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재활용폐자원신고서 작성하기

\* 하단 파란색 박스 부분은 확정신고시에만 작성(중고자동차 제외)

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경자산매입	작성하기	0	0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고매입세액		0	0	
변제대손세액	작성하기	0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0	0	
합계		0	0	

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폐자원은 매입처별로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중고자동차는 거래 건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포함하여 신고 하십시오.				
(단위: 원)				
- 전산매체 출입증으로 생성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③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단위: 원)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영수증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조회하기			
합계				

④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단위: 원)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매입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를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삭제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 - 없이 입력하십시오. ● 성명(상호) <input type="checkbox"/> 조회 ● 품명 <input type="checkbox"/> 조회 ● 건수 <input type="checkbox"/> 조회 ● 공제세율 <input checked="" type="radio"/> 3/103 <input type="radio"/> 10/110(중고자동차) ● 차량번호 <input type="checkbox"/> 조회 ● 수량 <input type="checkbox"/> 조회 ● 취득금액 <input type="checkbox"/> 조회      원 ● 매입세액 공제액 <input type="checkbox"/> 조회      0 원 ● 차대번호 <input type="checkbox"/> 조회				
※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를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신고내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신고는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과세표준명세서에 중고자동차 관련 입증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				
>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단위: 원)				
매출액	예정분	확정분	합계	
대상액 한도계산	한도율	한도액		
당기매입액	영수증등	세금계산서	합계	
공제가능한 금액				
>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단위: 원)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공제대상 세액	3/103			
이미 공제받은 세액	예정신고분	별별조기분	합계	
공제(남부)할 세액				

## ○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 전자신고세액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작성

(단위: 원)			
● 경감·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신용카드제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작성하기	0
합계	(20)	작성하기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 <b>학점신고시에만 공제가능</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b>16년부터 폐지</b>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타			
합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을 납부할 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세제표준명세 입력시 택시운송사업 업종을 입력한 경우에만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일정금액(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의 위탁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에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완료**

(단위: 원)			
● 신용카드제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b>작성하기</b> 0 원			
전자화폐 매출금액 <b>작성하기</b> 0 원			
※ 신용카드제출전표 등 발행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잘 살펴 공제금액에 차를 반영하여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공제세액			
기공제세액			

※ “신용카드제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1. 개인납세자 : 공제 불가능  
 2. 개인납세자 중 간이파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중 일반납세자 :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을 범위내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적용년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포함)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자는 적용 불가능]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제출전표 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10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제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비율로 매출·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력완료**

## ○ 최종 납부(환급)세액 작성하기 및 신고서 작성완료

\*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작성 제출

● 최종 납부(환급) 세액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21)	④	0	
예정고지 세액	(22)	④	0	
사업영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도움말	④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도움말	④	0
가산세액계	(25)	뒷쪽으로	④	0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④-④-④-④-④+④)		실제 납부 환급할 세액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0

※ 신고대상기간 중에 예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보여지고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보여집니다.  
 ※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동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작성 제출				(단위:원)
거래은행	선택	계좌번호		(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 면세 사업 수입금액				
금액	0	작성하기	※ 면세매출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금액	0	작성하기	면세 매출·매입이 있는 경우 작성	
계산서 발급금액	(82)	0	작성하기	
계산서 수취금액	(83)	0	작성하기	
이전 <span style="background-color: blue; color: white; padding: 2px 10px; border-radius: 5px;">신고서 입력완료</span>				

## ○ 신고서 제출화면

● 신고서 제출		제출여부 >>> 작성 중입니다.	미리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납부서 출력은 step2 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li> </ul>			
● 신고내용 요약			
매출세액 합계	0	매입세액 합계	0
경감공제세액 합계	0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0
예정고지세액	0	가산세액	0
사업영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0		
남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전 <span style="background-color: blue; color: white; padding: 2px 10px; border-radius: 5px;">신고서 제출하기</span>			

## ○ 접수증 출력화면, 납부서 출력하러 가기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클릭 메뉴접기

제출여부 >>> 제출 완료 되었습니다. 미리보기

01. 일반과세 입력  
02. 일반과세  
03. 과세표준  
04. 매입·경  
05.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단위: 원)

0 0 0 0

상세내역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 ○ 제출한 신고서 목록 보기, 납부서 출력하기

- 'Step2. 신고내역' 탭으로 이동하여 출력 가능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할복같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할복같이 가까이 하거나, 할복같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후, 접수증(□)을 선택하여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제출여부]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한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목록

신고일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작성방법 전체 부서사용자ID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한다.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10 건 확인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ID	부속서류 제출여부
2018…	부가…	정…	정…		인터넷(…)						

## 4)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방법

- 신고기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단일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미리보기

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간이과세자 업종선택 처리  
간이과세자 무설적신고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 처리

02.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율

04. 매일·경감·공제세액

05. 가산세

06. 기타제출서류(영세종제일)

07. 기타제출서류(영세종제일)

08. 신고서제출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폐업신고 한 사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확인

신고구분: 2018 년 1기 예정 ( ) 회정

개업일자: [ ]

예정신고(고지)여부: 예 ( ) 아니오 ( )

사업자 세부사항

상호: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전화번호: [ ] - [ ] - [ ] 사업자전화번호: [ ] - [ ] - [ ]

휴대전화번호: [선택]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 직접입력 ( )

우편번호: [ ] 주소검색: ※ 주소 정정 필요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 ]

지번주소: [ ]

업종코드: [ ] 조회 [ ] 업태: [ ] 종목: [ ]

세무대리인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저장 후 다음이동

## ○ 간이과세자 해당 업종 선택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십시오.  
 ·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종선택	<input type="checkbox"/>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input type="checkbox"/>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농·임·어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속박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input type="checkbox"/> 운수 및 통신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업(금융관련서비스업 포함)

※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사안을 선택하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영세을 매출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신고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입력

도움말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산매체 제출을으로 생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명세서를 출력하기로 신고할 경우 “번화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도움말

· 예정신고 누락본은 **※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배입자로는 화면 하단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합계란에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법인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이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금급기액, 세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세 제출 불필요)  
 · 미리보기에는 600건만 제출됩니다.  
 · 정기신고분 제제출, 수정신고, 경정정구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이 2,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파일 제출건은 200건 이만) 이미 제출된 내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 작성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정보**

카드회원번호	<input type="text"/>	※ *,- 없이 입력하십시오.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거래건수 <input type="text"/> 건
공급기액	<input type="text"/> 원	세액 <input type="text"/> 원

※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단위: 원)

**●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기액	세액
1 총0건(1/1)					

※ 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풋터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삭제 (단위: 원)

**● 합계**

구분	거래건수	공급기액	세액
합계			
현금영수증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화물운전자복지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기타 신용카드			

이전
입력완료

##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입력

**❶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도움말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대행(택시, 미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면세매출분			
봉사료			

※ 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b>발행내역 조회</b>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b>발행내역 조회</b>
-------------------------	----------------	------------	----------------

**❷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0	

이전
입력완료

## ○ 간이과세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신마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 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송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 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송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매입처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과세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과세분 <input type="radio"/> 영세율분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상호(법인명)		
매수		건	공급가액		
세액		원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	---------	---------	----	---------	-------

1
총0건(1/1)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 삭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 계				

이전
입력완료

## ○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입력

●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원) 작성하기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	5/100	10/100 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0	10/100	10/100 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0	20/100	10/100 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0	30/100	10/100 0
영세율 적용분	(5)	0		0/100 0
제고납부세액	(6)			0
합계	(7)	0		⑩ 0

● 골제세액 (단위:원) 작성하기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0		0
의제매입세액공제	(9)	0		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1)			0
신용카드배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0		0
기타	(13)	0		0
합계	(14)		⑪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⑫	0
예정고지(신고)세액 ※ 예정 신고(고지) 내역이 있는 경우 입력	(16)			0

● 가산세(단위:원) 작성하기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0	5/1,000	0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0	20/100	0
신고불성실 무신고(부당)	(19)	0	40/100	0
신고불성실 과소신고(일반)	(20)	0	10/100	0
신고불성실 과소신고(부당)	(21)	0	40/100	0
납부불성실 가산세	(22)	0	납부지연일수 1일당 3/10,000	0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0	1/100	0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24)	0	5/1,000	0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개좌 미사용	(25)	0	10/100	0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개좌 지연입금	(26)	0	입금지연 일수 1일당 3/10,000	0
합계	(27)	0	⑬	0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⑩-⑪-⑫-(16)+⑬)	(28)	0
------------------------------------	------	---

● 수입금액 명세(단위:원) 작성하기				
과세표준명세금액	0 원	면세사업수입금액	0 원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단위:원)				
거래은행	해당없음	계좌번호	(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이전	신고서 입력완료
----	----------

## 5) 부동산임대업자 간편신고 작성방법

- (대상)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 폐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직전기(2017년) 확정신고자에 한하여 간편신고 이용가능
  - ① 간이과세자-정기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선택

- ② 직전기 신고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 클릭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폐업신고 한 사업자는 산고기간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산고기간	2018-01-01	~	2018-12-31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산고구분	[선택]			
개인일자	[선택]			
폐경신고(고자)여부	[선택]			

새로작성하기

산고서 불러오기

원 페이지의 예시자

작전기신고가 존재합니다.  
일대자에게 내용 표정없이 신고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사업자세부사항

상호		[선택]		[선택]
주민등록번호	[선택]		[선택]	
사업장전화번호	[선택]		[선택]	
휴대전화번호	[선택]		[선택]	
우편번호	[선택]		[선택]	
도로명주소	[선택]		[선택]	
지번주소	[선택]		[선택]	
업종코드	[선택]		[선택]	
	조회	업태		등록

※ 주소 검색 필요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절정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성명		[선택]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선택]	
정화번호	[선택]		[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③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아래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요약** (단위: 원)

매출세액 합계	218,880	공제세액 합계	200,000
예정신고(고지)세액	200,000	가산세액	0
차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18,880	실제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200,000

납부의무면제에 대한 적용기준 안내

-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유통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 69조 제3항)

님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원 입니다.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다음](#)

④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내역 확인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미리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간이)신고서
첨부한서류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1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단위: 원)

200,000
0
-200,000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닫기](#)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다음](#)

## 6) 문답형 간편신고 작성방법

- (대상) 단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① 정기신고(문답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전자신고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불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결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 외 계약동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결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문답형신고)

▶ 기타/증빙서류

매리납부신고 증빙서류 제출

▶ 카드사 대리납부

정기신고 (확정/예정) 수정신고 결정청구

### ② 문답형 신고 바로가기 선택

**부가가치세 문답형 신고**

문답형 신고는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고·답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영세율 폐율·개고납부폐역·가산세액·면제폐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부동산임대사업자)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형 신고 바로가기 정기신고(확정/예정) 바로가기

신고 이용방법 전자신고  
기자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생산 및 유통과정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불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결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 외 계약동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결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문답형신고)

### ③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내용을 읽고 작성

####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02. 간이과세자 업종선택  
**03.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0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영세서  
 0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07.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08. 사업장현황영세서  
 09. 예정고지(신고)내역  
 10. 신고서 입력내용 보기  
**11. 신고서제출**

승인 | 135-28-98672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①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 귀 사업장에서 과세기간(1.1 ~ 12.31)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 1.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위 금액을 모르시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입력하세요  
 (단위:원)

신용 · 직불 · 기명식 선불카드 1000000 조회하기

※ 결제대행(택시, 이니시스, kcp 등) 사업자와 오픈마켓(네이버, 다음,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위 금액을 모르시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입력하세요  
 (단위:원)

현금영수증 0 조회하기

**③ 그 밖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 밖의 매출액 0  
 (단위:원)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공제금액	1,000,000 원
공제세액	26,000 원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공제금액 × 2.6%],  
 그외 다른 업종은 [공제금액 × 1.3%]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본정보 입력 이전 저장후 다음 신고내용

####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내용을 읽고 작성

Step 1. 체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신고내역	
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02. 간이과세자 업종선택 03. 관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b>0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b> ▼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별세서 06. 의제폐입세액공제신고서 07.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08. 사업장현황영세서 09. 예절고지(신고)세액 10. 신고서 입력내용 보기		<b>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b>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b>06.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월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b>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음의 서식에 수취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미리보기</span>	
<b>II. 신고세제증명</b>		<b>07.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b>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1 과세분 1,000,000 100,000 영세소분 0 0 0 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0 0 과세분 0 0 영세소분 0 0 0 0 소계 1 1 과세분 1,000,000 100,000 영세소분 0 0 0 0		<b>08.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세액 작성</b>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음의 서식에 거래처별로 간접하여 수취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과세분 <input type="radio"/> 영세소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상호(법인명) <input type="checkbox"/> 매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원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였을 때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입력내용추가</span>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0건(1/1)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선택내용 삭제</span>	
<b>0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b>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 1 1 1,000,000 원 100,000 원		기본정보 입력 이전 저장 후 다음 신고내용	

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관련 내용을 읽고 작성

Step 1. 세금신고	Step 2. 선고내역	Step 3. 납부내역																								
<p>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p> <p>02. 간이과세자 업종선택</p> <p>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p> <p>04. 평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p> <p>05. 산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p> <p>▼</p> <p>06. 의제폐입세액공제신고 서</p> <p>07. 평입처별 계산서합계 표</p> <p>08. 사업장현황명세서</p> <p>09. 예정고지(신고)내역</p> <p>10. 신고서 입력내용 보기</p> <p>11. 신고서제출</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여부 &gt;&gt;&gt; 작성중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미리보기</p>																									
	<p><b>❶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b></p>																									
	<p><b>❷ 가맹점 정보</b></p>																									
	<p>- 사업을 관련하여 기타의 신용카드 매입에 있는 경우 다음의 서식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사업을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음식 등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음식 접객 세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카드회원번호 <input type="text"/> ✕ - 없이 입력하십시오.</p>																									
	<p>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거래건수 <input type="text"/> 건</p>																									
	<p>공급가액 <input type="text"/> 원 세액 <input type="text"/> 원</p>																									
	<p>*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p>																									
	<p><b>❸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b> <span style="float: right;">(단위:원)</span></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련번호</th> <th>카드회원번호</th> <th>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th> <th>거래건수</th> <th>공급가액</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0건(0/1)</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0건(0/1)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0건(0/1)																							
<p>*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려면, 막대 툴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p>																										
<p><b>❹ 합계</b> <span style="float: right;">(단위:원)</span></p>																										
<p>- 사업을 관련하여 자동증발을 한영수증, 화물운송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에 있는 경우 다음의 서식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거래건수</th> <th>공급가액</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r> <tr> <td>현금영수증</td> <td><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td> <td></td> <td></td> </tr> <tr> <td>화물운송자복지카드</td> <td><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td> <td></td> <td></td> </tr> <tr> <td>사업용신용카드</td> <td><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td> <td></td> <td></td> </tr> <tr> <td>기타 신용카드</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현금영수증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화물운송자복지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기타 신용카드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현금영수증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화물운송자복지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기타 신용카드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button" value="기본정보입력"/> <input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type="button" value="저장후 다음"/> <input type="button" value="신고내용"/></p>																										

#### ⑥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관련 내용을 읽고 작성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세제제한액

제출여부:  확정을입니다. [미리보기]

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02. 간이과세자 법정신고액

03. 미세포증 및 배출세액 계산

04. 애입처별 세금계산서 입력표

05. 신증기준서 확정표 등 수령일에서

06. 미세예입세액 증액신고서

07. 애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08. 사업장현황증명서

09. 예정고지(신고)내역

10. 신고서 입현내용 보기

11. 신고서제출

● 미세예입세액 증액 신고서

• 미세예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하는 버튼입니다.

● 농·어민등으로부터 예입분에 대한 양세

- 농어민등으로부터 조정 금액받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이동의 서식이 예입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자 정령  주민등록번호  조회

• 견수  국정

• 수령  예입기여

※ 조증내용을 추가한경우, 위 항목을 포함한 주 조증내용의 내용을 주로입시로. [선택내용추가] (선택)

● 농·어민등으로부터 예입분에 대한 양세

□ 입현번호 정령 주민등록번호 견수 국정 수령 예입기여

※ 거처선택기자내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품목에서 원활한 분류 선택한 후 조증내용의 내용을 주로입시로. [선택내용추가] (선택)

● 연세농수산물증 세입기여 합계

- 연세농수산물증을 활용하였을 경우 세부상 계좌와 계좌·기관의 사용하고 미세예입세액을 증저하였으려고 할 경우, 다음의 서식의 거산서와 신증기자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예입기여	• 견수	• 예입기여	• 국정	• 미세예입세액
사업자로부터 예입분 계산서	<input type="button" value="조회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사업자로부터 예입분 신용카드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농·어민등으로부터 예입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0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0

※ 품목에 따라 이하 조정한 금액을 선택날짜로. [선택]

## ⑦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관련 내용을 읽고 작성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신제내역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02. 간이과세자 업종선택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04. 폐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05. 신용카드마출전표등  
수령명세서

06. 의제폐입세액공제신고  
서

07. 폐입처별 계산서합  
계표

08. 사업장현황명세서

09. 예정고지(신고)세액

10. 신고서 입력내용 보기

11. 신고서제출

**❶ 폐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사업과 관련하여 폐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음의 서식에 수취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자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❷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 협계**

구분	폐입처수	매수	폐입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분	0	0	0 원

**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폐입처별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거래처상호	<input type="text"/>
매수	<input type="text"/>	폐입금액	<input type="text"/>	원

※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폐입처별 명세서 [입력] 버튼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선택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매수	폐입금액(원)
초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총0건(1/1)

※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폐입처별 명세서 [삭제] 버튼면, 위 항목을 [선택] 항목을 체크한 후 오른쪽의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삭제

#### ⑧ 사업장현황명세서 관련 내용을 읽고 작성

## ⑨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입력한 후 신고서 입력한 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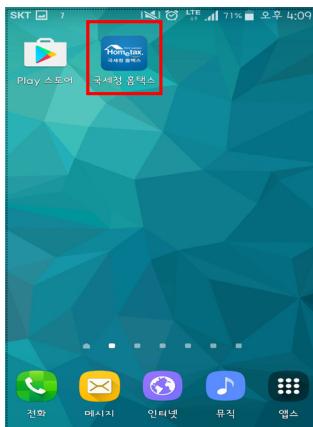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학제내역																																																												
<b>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b>																																																														
<b>02. 간이과세자 업종선택</b>																																																														
<b>03. 폐포장 및 매출세액(단위: 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성하기</span></b>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금액</th> <th>부가 가치율</th> <th>세율</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td> <td>(1) 0</td> <td>5/100</td> <td>10/100</td> <td>0</td> </tr> <tr> <td>소태업, 폐설을 제로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td> <td>(2) 12,000,000</td> <td>10/100</td> <td>10/100</td> <td>120,000</td> </tr> <tr> <td>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문수 및 통신업</td> <td>(3) 0</td> <td>20/100</td> <td>10/100</td> <td>0</td> </tr> <tr> <td>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td> <td>(4) 0</td> <td>30/100</td> <td>10/100</td> <td>0</td> </tr> <tr> <td>영세점 착용분</td> <td>(5) 0</td> <td></td> <td>0/100</td> <td></td> </tr> <tr> <td>폐고납부세액</td> <td>(6) 0</td> <td></td> <td></td> <td>0</td> </tr> <tr> <td><b>합계</b></td> <td>(7) 12,000,000</td> <td></td> <td>⑧</td> <td>120,000</td> </tr> </tbody> </table>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	5/100	10/100	0	소태업, 폐설을 제로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2,000,000	10/100	10/100	120,00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문수 및 통신업	(3) 0	20/100	10/100	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0	30/100	10/100	0	영세점 착용분	(5) 0		0/100		폐고납부세액	(6) 0			0	<b>합계</b>	(7) 12,000,000		⑧	120,000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	5/100	10/100	0																																																										
소태업, 폐설을 제로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2,000,000	10/100	10/100	120,00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문수 및 통신업	(3) 0	20/100	10/100	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0	30/100	10/100	0																																																										
영세점 착용분	(5) 0		0/100																																																											
폐고납부세액	(6) 0			0																																																										
<b>합계</b>	(7) 12,000,000		⑧	120,000																																																										
<b>04. 예정고지(신고)세액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성하기</span></b>																																																														
<b>05. 신고서 입력내용 보기</b>																																																														
<b>06. 신고서 제출</b>																																																														
<b>07. 신고서내용</b>																																																														
<b>08. 예정고지(신고)세액</b>																																																														
<b>09. 신고서 입력내용 보기</b>																																																														
<b>10. 신고서 제출내용</b>																																																														
<b>11. 신고서제출</b>																																																														
<b>01. 폐포장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성하기</span></b>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금액</th> <th>부가 가치율</th> <th>세율</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폐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td> <td>(8) 100,000</td> <td></td> <td></td> <td>10,000</td> </tr> <tr> <td>의제폐입세액공제</td> <td>(9) 0</td> <td></td> <td></td> <td>0</td> </tr> <tr> <td>폐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td> <td>(10) 0</td> <td></td> <td></td> <td>0</td> </tr> <tr> <td>전자신고세액공제</td> <td>(11) 0</td> <td></td> <td></td> <td>0</td> </tr> <tr> <td>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td> <td>(12) 2,000,000</td> <td></td> <td></td> <td>26,000</td> </tr> <tr> <td>기타</td> <td>(13) 0</td> <td></td> <td></td> <td>0</td> </tr> <tr> <td><b>합계</b></td> <td>(14) 0</td> <td></td> <td>⑩</td> <td>36,000</td> </tr> </tbody> </table>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폐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100,000			10,000	의제폐입세액공제	(9) 0			0	폐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1) 0			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2,000,000			26,000	기타	(13) 0			0	<b>합계</b>	(14) 0		⑩	36,000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폐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100,000			10,000																																																										
의제폐입세액공제	(9) 0			0																																																										
폐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1) 0			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2,000,000			26,000																																																										
기타	(13) 0			0																																																										
<b>합계</b>	(14) 0		⑩	36,000																																																										
<b>02. 폐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b>																																																														
<b>03. 예정고지(신고)세액</b>																																																														
<b>04. 예정 신고(고지) 내역에 있는 경우 입력</b>																																																														
<b>05. 가산세(단위: 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성하기</span></b>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금액</th> <th>부가 가치율</th> <th>세율</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폐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td> <td>(15) 0</td> <td>5/1,000</td> <td></td> <td>0</td> </tr> <tr> <td>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td> <td>(16) 0</td> <td>20/100</td> <td></td> <td>0</td> </tr> <tr> <td>신고불성실 무신고(부당)</td> <td>(17) 0</td> <td>40/100</td> <td></td> <td>0</td> </tr> <tr> <td>신고불성실 과소신고(일반)</td> <td>(18) 0</td> <td>10/100</td> <td></td> <td>0</td> </tr> <tr> <td>신고불성실 과소신고(부당)</td> <td>(19) 0</td> <td>40/100</td> <td></td> <td>0</td> </tr> <tr> <td>납부불성실 가산세</td> <td>(20) 0</td> <td></td> <td>납부기한일수 1일당 3/10,000</td> <td>0</td> </tr> <tr> <td>결정·감정기관 확인 폐입세액 공제 가산세</td> <td>(21) 0</td> <td>1/100</td> <td></td> <td>0</td> </tr> <tr> <td>영세점 폐포장 신고불성실 가산세</td> <td>(22) 0</td> <td>5/1,000</td> <td></td> <td>0</td> </tr> <tr> <td>폐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td> <td>(23) 0</td> <td>10/100</td> <td></td> <td>0</td> </tr> <tr> <td>폐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자연입금</td> <td>(24) 0</td> <td></td> <td>입금지연 일수 1일당 3/10,000</td> <td>0</td> </tr> <tr> <td><b>합계</b></td> <td>(25) 0</td> <td></td> <td>⑪</td> <td>0</td> </tr> </tbody> </table>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폐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5) 0	5/1,000		0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6) 0	20/100		0	신고불성실 무신고(부당)	(17) 0	40/100		0	신고불성실 과소신고(일반)	(18) 0	10/100		0	신고불성실 과소신고(부당)	(19) 0	40/100		0	납부불성실 가산세	(20) 0		납부기한일수 1일당 3/10,000	0	결정·감정기관 확인 폐입세액 공제 가산세	(21) 0	1/100		0	영세점 폐포장 신고불성실 가산세	(22) 0	5/1,000		0	폐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23) 0	10/100		0	폐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자연입금	(24) 0		입금지연 일수 1일당 3/10,000	0	<b>합계</b>	(25) 0		⑪	0
항목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폐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5) 0	5/1,000		0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6) 0	20/100		0																																																										
신고불성실 무신고(부당)	(17) 0	40/100		0																																																										
신고불성실 과소신고(일반)	(18) 0	10/100		0																																																										
신고불성실 과소신고(부당)	(19) 0	40/100		0																																																										
납부불성실 가산세	(20) 0		납부기한일수 1일당 3/10,000	0																																																										
결정·감정기관 확인 폐입세액 공제 가산세	(21) 0	1/100		0																																																										
영세점 폐포장 신고불성실 가산세	(22) 0	5/1,000		0																																																										
폐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23) 0	10/100		0																																																										
폐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자연입금	(24) 0		입금지연 일수 1일당 3/10,000	0																																																										
<b>합계</b>	(25) 0		⑪	0																																																										
<b>06. 자간 납부할 세액 (한글판을 제외) (⑧-⑩-⑪-(16)+⑫)</b>																																																														
<b>07. 수입금액 명세(단위: 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성하기</span></b>																																																														
<table border="1"> <thead> <tr> <th>폐포장영세금액</th> <th>12,000,000 원</th> <th>민세사업수입금액</th> <th>0 원</th> </tr> </thead> </table>			폐포장영세금액	12,000,000 원	민세사업수입금액	0 원																																																								
폐포장영세금액	12,000,000 원	민세사업수입금액	0 원																																																											
<b>08.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단위: 원)</b>																																																														
<table border="1"> <thead> <tr> <th>거래은행</th> <th>예금없음</th> <th>계좌번호</th> <th>(-'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th> </tr> </thead> </table>			거래은행	예금없음	계좌번호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거래은행	예금없음	계좌번호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input type="button" value="마진"/> <input type="button" value="신고서 입력완료"/>																																																														

⑩ 신고서 입력내용보기에서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신고내용 확인

## 나. 모바일 홈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

### 1)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무실적 신고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 ④ 세금신고/납부 터치



#### ⑦ 신고서 작성·제출

무실적 신고(일반과세자 및 법인)

① 무실적 신고내용

매출세액	0 원
경감·공제세액	0 원
예정신고(고지)세액	0 원
예정신고미환급세액	0 원
차기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 세액)	0 원

② 국세환급금계좌 신고

은행	해당없음
계좌번호	_____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처음으로 신고서 제출

#### ② 로그인 터치



#### ⑤ 부가가치세 터치



#### ⑧ 접수증 확인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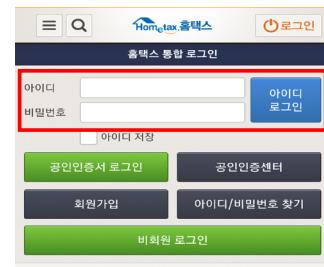
① 접수내용

접수번호	_____
접수일시	_____
과세기간	2018-07-01 ~ 2018-12-31
신고구분	2018 년 2 기 (정기(확정))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상호	_____
차기감납부할세액	0 원
실제납부할세액	0 원

●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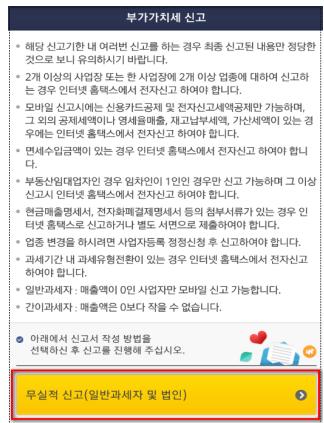
####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 홈택스 서비스는 일부 쿠팡(이용안내/민원상담 등)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⑥ 무실적신고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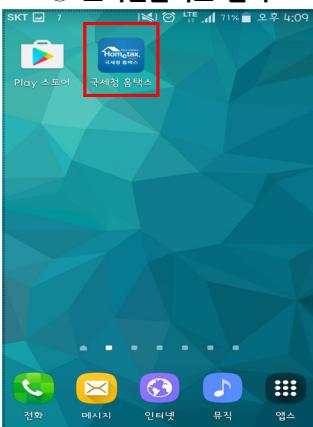
● 아래에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진행해 주십시오.

##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편신고자(간이과세자)

### ○ (대상1)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기입력된 임대차계약 내용 및 세액 확인 후 원클릭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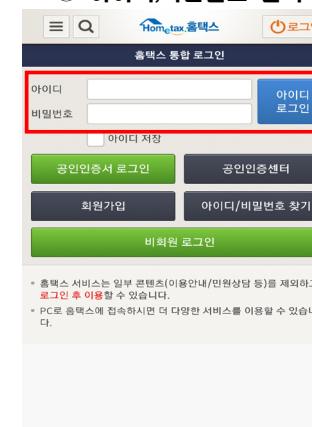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세금신고/납부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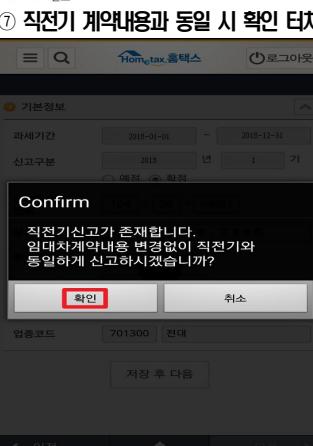
**⑤ 부가가치세 터치**



**⑥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 터치**



**⑦ 직전기 계약내용과 동일 시 확인 터치**



**⑧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터치**



**⑨ 신고서 접수증 확인**



○ (대상2)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자는 임차인이 1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 가능

① 로그인 후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부가가치세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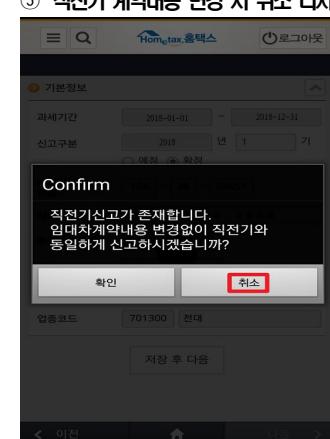
③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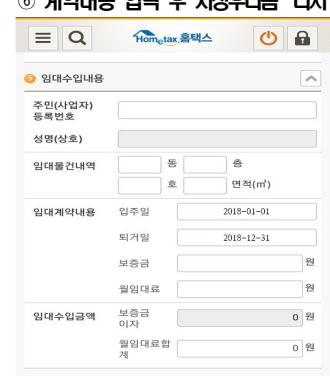
④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 터치



⑤ 직전기 계약내용 변경 시 취소 터치



⑥ 계약내용 입력 후 저장후다음 터치



⑦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제출 터치



⑧ 신고서 접수증 확인



### 3)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간편신고자(간이과세자)

#### ① 로그인 후 세금신고/납부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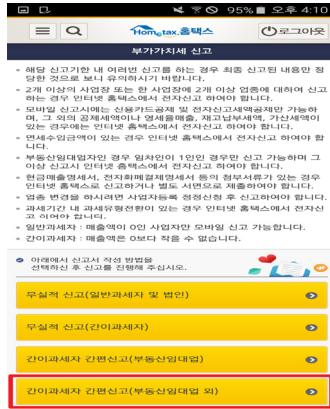
HomeTax 화면에서 세금신고/납부 터치를 선택한 경우, 세금신고/납부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신고/납부, 조회/발급, 증명발급, 모바일 민원실, 사업자등록증,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증명발급, MyNTS 등 다양한 서비스 링크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신고/납부(126 번 1 : 홈택스상담, 126 번 2 : 세법상담) 및 열쇠모양 아이콘(개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이 표시됩니다.

#### ② 부가가치세 터치



HomeTax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터치를 선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신고/납부, 조회/발급, 증명발급, 신청/체출, 신감/체보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간편신고) 항목이 강조 표시됩니다. 다른 세금 분류 항목(증한소득세(단일소득수준경비율), 국세납부, 증인소득세(증인수수료),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증명서)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 ③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 외 터치



HomeTax 화면에서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 외 터치를 선택한 경우,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신고/납부, 조회/발급, 증명발급, 신청/체출, 신감/체보 등과 함께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업 외) 항목이 강조 표시됩니다. 다른 세금 분류 항목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 ④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 터치



HomeTax 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후다음 터치를 선택한 경우, 기본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과세기간(2018-01-01 ~ 2018-12-31), 신고구분(2018년 1기 정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종코드 등 기본적인 신고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저장 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 ⑤ 매출액 입력 후 저장후다음 터치



HomeTax 화면에서 매출액을 입력한 후 저장후다음 터치를 선택한 경우, 매출액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신고내용(간접선택), 과세분 매출(매출금액 30,000,000 원, 부가가치율 20/100, 과세분 매출 세율 10/100, 과세분 매출 세액 600,000 원) 등과 함께 저장 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 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입력 후 저장후다음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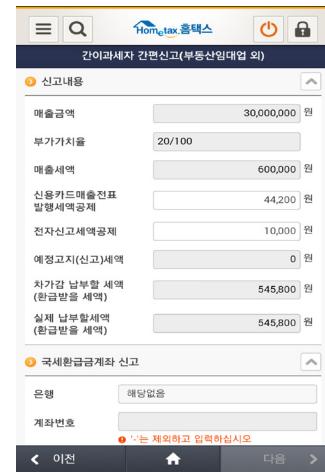
HomeTax 화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한 후 저장후다음 터치를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금액(1,700,000 원), 신용-직불-기명식(1,200,000 원), 현금영수증(500,000 원) 등과 함께 저장 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 ⑦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



HomeTax 화면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한 후 저장후다음 터치를 선택한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사업장(대지 0 m<sup>2</sup>, 건물 0 m<sup>2</sup>, 바닥면적 0 m<sup>2</sup>, 연면적 0 m<sup>2</sup>, 종업원수 0 명, 차량 0 대, 화물차 0 대), 사업장현황(승용차 0 대), 그리고 저작권 및 속권자만 기재합니다(객실수 0 개, 택지수 0 개, 의자수 0 개, 주최장 유무) 등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저장 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 ⑧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제출 터치



HomeTax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제출 터치를 선택한 경우, 신고내용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신고내용(매출금액 30,000,000 원, 부가가치율 20/100, 매출세액 600,000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44,200 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원, 예정고지(신고)세액 0 원, 차기감 납부할 세액(한글판 세액) 545,800 원, 실제 납부할세액(한글판 세액) 545,800 원) 등과 함께 국세환급금계좌 신고(은행 해당없음, 계좌번호 0~9자리) 항목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저장 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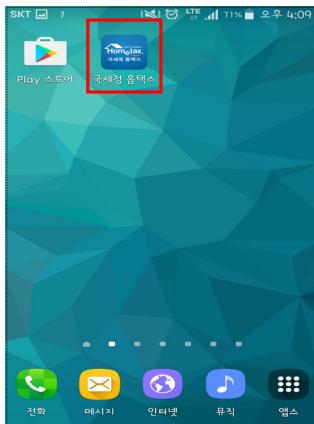
#### ⑨ 신고서 접수증 확인



HomeTax 화면에서 신고서 접수증 확인 터치를 선택한 경우, 접수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접수증(접수번호, 접수일시, 과세기간 2018-01-01 ~ 2018-12-31, 신고구분 2018년 1기 정기(정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차기감 납부할세액, 실제 납부할세액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 4)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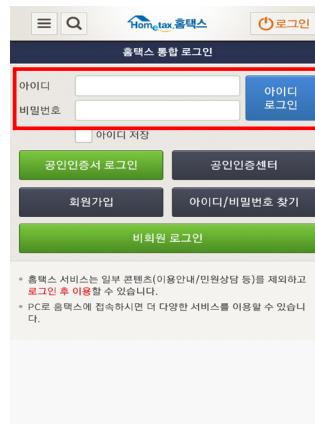
###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 ② 로그인 터치



###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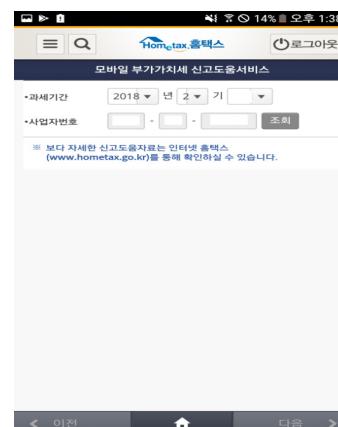
### ④ 세금신고/납부 터치



### ⑤ 부기기자세 신고도움서비스 터치



### ⑥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입력



### ⑦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입력



### ⑧ 신고도움자료 확인



## 다. 증빙서류 제출방법 (영세율 첨부서류 등)

-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속서류를 전자 제출하려는 사업자

- ①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링크가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증빙서류 제출' 버튼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②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 - 첨부서류를 제출할 신고서를 선택 후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신고서를 접수완료한 후에 신고서를 제외한 신고 관련 부속서류(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당국인 신고서 부속서류는 세무당국인과 개인(법인)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단, 개인(법인)이 신고시 개인(법인)만 부속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주의)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후,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세는 해당없음)

부속서류【첨부하기】를 누르시면 파일을 첨부하신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로 제출 가능합니다. 부속서류를 제출한 후 추가 제출할 경우, 【제출내역 보기】의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로 계속 제출 가능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하신 경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본인인증을 다시 진행하세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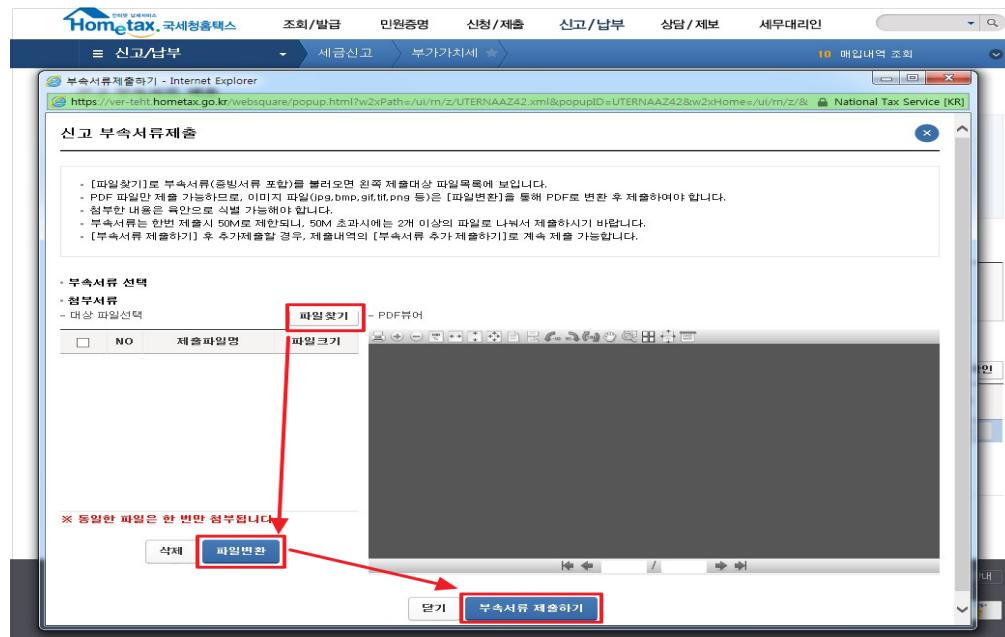
제출대상 신고목록

신고일자	2019-01-01	~	2019-01-25	제목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b>조회하기</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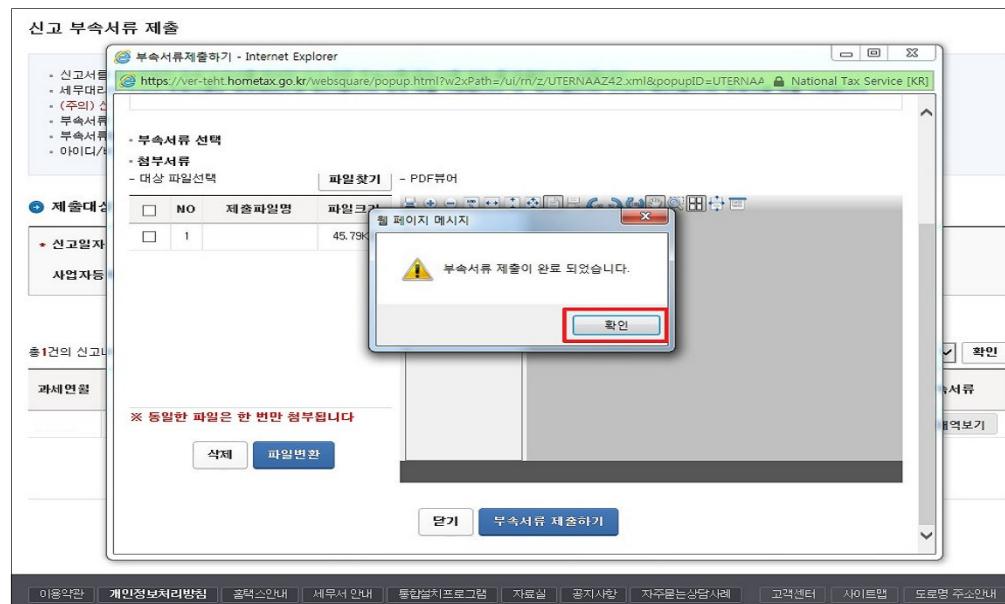
※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과세면적	신고서 종류	신고 구분	신고 유형	상호 (설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증	제출자 구분	제출자ID	부속서류
2018년	부가가치	경기	경기							<b>첨부하기</b>

③ 첨부서류 '파일찾기' - '파일변환' -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④ 팝업창에서 부속서류 제출완료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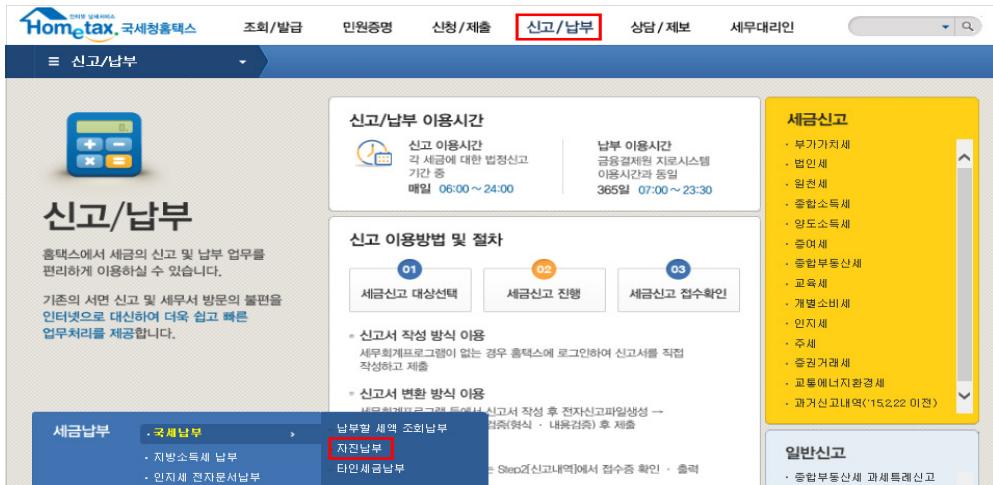
## 2 전자납부 요령

### 1)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 서면신고한 후 납부만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는 경우

#####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



##### ○ 납부할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



- ‘국세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사이트와 연결)창이 뜨면, 은행을 선택하고 납부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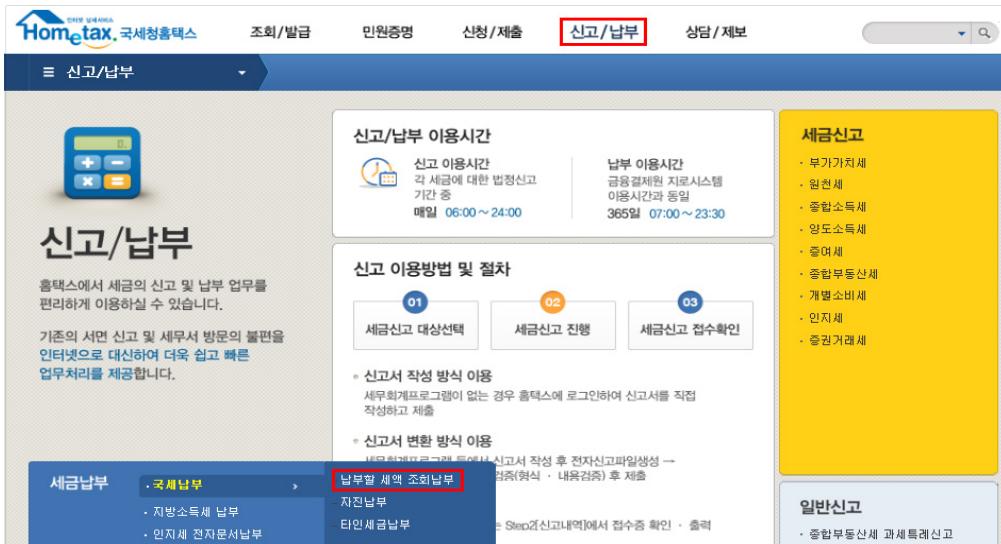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은행 선택                           혼행 선택                           산업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은행                           농협축협                           우리                           SC               <b>국세청</b> </div> 통신상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체국                           KEB하나                           신한           </div> 납부계좌번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키보드로           </div> 계좌비밀번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계좌비밀번호를 키보드로           </div> 긴급연락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긴급연락처           </div> 금융기관별 납부가능 시간 안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div>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기업, 수협, 농협중앙회, SC제일,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div>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기업, 수협, 농협중앙회, SC제일,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div> 납부하기 <span style="margin-left: 20px;">취소</span>				
* 민원 관리를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시기 바랍니다.(자동 입력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로 납부불가)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b>▣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b>① 납부카드 선택</b>				
카드선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b>카드를 선택하세요</b>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온 포함)           </div>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b>② 공지사항</b>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div>				
<b>▣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b>③ 간편결제 선택</b>				
간편결제 선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b>간편결제를 선택하세요</b>               페이코(PAYCO)                           KB국민앱카드                           신한은행카드                           신한인터넷카드                           NH은행카드                           롯데리카드           </div>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b>④ 공지사항</b>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div>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b>▣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b>① 납부카드 선택</b>				
카드선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b>카드를 선택하세요</b>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온 포함)           </div>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b>② 공지사항</b>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div>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b>▣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b>③ 간편결제 선택</b>				
간편결제 선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b>간편결제를 선택하세요</b>               페이코(PAYCO)                           KB국민앱카드                           신한은행카드                           신한인터넷카드                           NH은행카드                           롯데리카드           </div>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b>④ 공지사항</b>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수정)2017년 7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div>				

## □ 전자신고 후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며, 해당 신고내역의 ‘납부하기’를 클릭



- '국세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사이트와 연결)창이 뜨면, 은행을 선택하고 납부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납부하기' 클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제수단선택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p>■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p>													
<p><b>② 납부카드 선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드선택         </td> <td style="width: 4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카드를 선택하세요</b>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div> </td> <td style="width: 4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카드사별 이벤트 보기</b> </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10px;"> <p><b>③ 공지사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 일</li> <li>■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ul>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鳟 포함)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b>수협카드</b>  <b>롯데카드</b>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text-align: right;">           비스 행사 안내            비스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text-align: right;">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td> </tr> </table>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드선택	<b>카드를 선택하세요</b>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div>	<b>카드사별 이벤트 보기</b>	<p><b>③ 공지사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 일</li> <li>■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ul>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鳟 포함)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b>수협카드</b>  <b>롯데카드</b>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text-align: right;">           비스 행사 안내            비스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text-align: right;">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td> </tr> </table>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 일</li> <li>■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ul>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鳟 포함)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b>수협카드</b> <b>롯데카드</b>	비스 행사 안내 비스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드선택	<b>카드를 선택하세요</b>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div>	<b>카드사별 이벤트 보기</b>											
<p><b>③ 공지사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 일</li> <li>■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ul>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鳟 포함)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b>수협카드</b>  <b>롯데카드</b>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text-align: right;">           비스 행사 안내            비스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text-align: right;">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td> </tr> </table>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 일</li> <li>■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ul>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鳟 포함)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b>수협카드</b> <b>롯데카드</b>	비스 행사 안내 비스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 일</li> <li>■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li> </ul>	<b>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b>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鳟 포함)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b>수협카드</b> <b>롯데카드</b>	비스 행사 안내 비스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제수단선택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p>■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p>						
<p><b>② 간편결제 선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편결제 선택       </td> <td style="width: 60%; border: 2px solid #0070C0; text-align: center;"> <b>간편결제 선택하세요</b>          페이코(PAYCO)          KB국민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앱카드          롯데 앱카드          NH 앱카드          롯데 앱카드       </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 <input type="button" value="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편결제 선택	<b>간편결제 선택하세요</b> 페이코(PAYCO) KB국민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앱카드 롯데 앱카드 NH 앱카드 롯데 앱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편결제 선택	<b>간편결제 선택하세요</b> 페이코(PAYCO) KB국민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앱카드 롯데 앱카드 NH 앱카드 롯데 앱카드	<input type="button" value="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p><b>③ 공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인터넷지로 주요납기일</li> <li>2018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안내</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li> <li>*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li> </ul> </li> </ul>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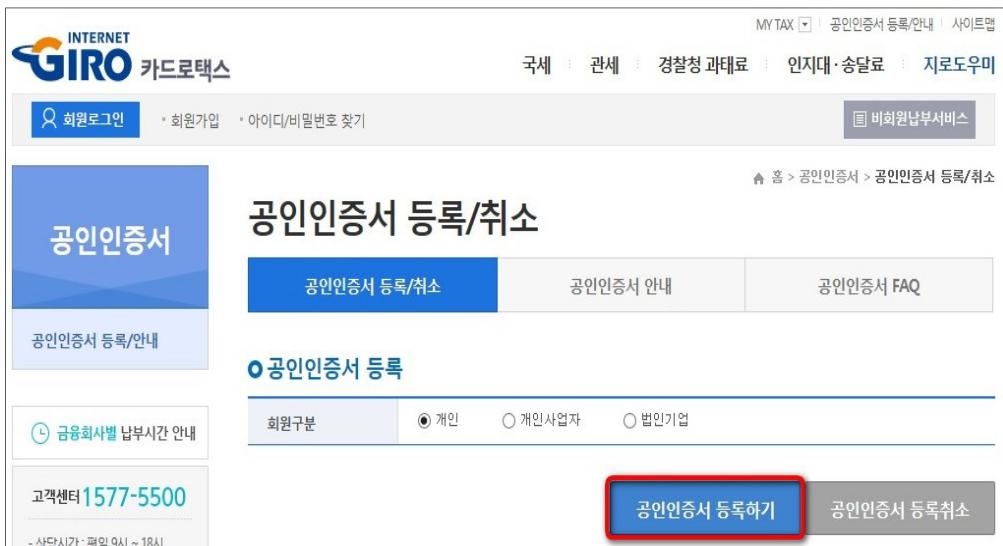
## 2)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 이용 절차

- 금융결제원사이트(<http://www.cardrotax.kr>) 초기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국세' ⇒ '자진납부'를 클릭



### ※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국세납부

조회납부

자진납부

연대납부

금융회사별 납부시간 안내

고객센터 1577-5500

- 평일 9시 ~ 18시  
- 납기일 9시 ~ 21시  
\* 납기일 보기

번호찾기

자진납부

Step01  
납부정보 입력

Step02  
입력정보 확인 및 납부

Step03  
납부결과 확인

고지내역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원 이상 금액인 수납처를 합니다. (단수금액 수납불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 부담)

국세청에서의 납부결과 확인이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2018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년월	결정구분	세액
0105	19 01 2 확정부 가남	41 부가가치세	
납세자명	<input type="text"/>	납세자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세입정수관서	선택	세입정수관계번호	180616

● 납부 할 세금내역 (납부하실 세금만 입력하시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세	<input type="text"/>
교육세	<input type="text"/>
농어촌특별세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확인

- 결제수단선택에서 '신용카드'를 선택

● 납부 할 세금내역

본세	1,000원
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
합계	1,000 원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복합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 납부할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를 클릭

### ● 납부카드 선택

* 카드선택	<input style="width: 100%; height: 100%; border: none;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padding: 2px; margin-bottom: 2px;" type="button" value="카드"/> <input checked="" style="width: 15px; height: 15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margin-right: 5px;" type="radio" value="미사용"/> 미사용 <input style="width: 15px; height: 15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margin-right: 5px;" type="radio" value="사용"/> 사용 <input style="width: 1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0f0f0; margin-top: 5px;" type="button" value="포인트 이용권현 안내"/>	카드사별 루이자 할부								
* 포인트 사용 여부										
* 할부기간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0f0f0; margin-bottom: 2px;" type="button" value="일시불"/> <small>(5만원 미만은 할부불가)</small>									
* 카드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 유효기간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월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년 <2017년 1월인 경우 01/17로 입력>									
* 주민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납부금액</th> <th style="width: 50%;">긴급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납부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납부대행 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원</td> </tr> </tbody> </table>		납부금액	긴급연락처	납부세액	원	납부대행 수수료	원	합계	원	<small>* 납부결과 안내 등 민원권리를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mall>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010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2px;" type="text"/> <input type="checkbox"/> <small>입력 한 연락처를 회원정보에도 반영합니다.</small>
납부금액	긴급연락처									
납부세액	원									
납부대행 수수료	원									
합계	원									
<small>*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small> <small>*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small> <small>(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부담)</small> <small>* 실납부자 본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회원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small>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3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0px;" type="button" value="납부하기"/>		<input style="width: 100px; height: 30px; background-color: #ccc;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0px;" type="button" value="취소"/>								

\* 납부대행수수료 0.8% (체크카드는 0.5%)

- 각 해당카드사의 카드결제 창을 통하여 카드결제

## □ 카드포인트로 세금 납부하기

-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선택 후 포인트 사용 여부에 '사용'을 선택하면 포인트로 납부 가능

**○ 납부카드 선택**

* 카드선택	카드 <input type="button" value="▼"/>	카드사별 투이자 할부
* 포인트 사용 여부	<input type="radio"/> 미사용 <input checked="" type="radio"/> 사용 <input type="button" value="포인트 이용권리 안내"/>	
* 할부기간	일시불 <input type="button" value="▼"/>	(5만원 미만은 할부불가)
* 카드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유효기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2017년 1월인 경우 01/17로 입력>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납부금액		긴급연락처
납부세액	원	* 납부결과 안내 등 민원권리를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대행 수수료	원	<input type="text"/> 010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합계	원	<input type="checkbox"/> 입력한 연락처를 회원정보에도 반영합니다.

-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부담)
- 실납부자 본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회원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 조회 가능

**포인트 조회**



**신용카드 포인트 : 50,000**

### 3)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모바일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터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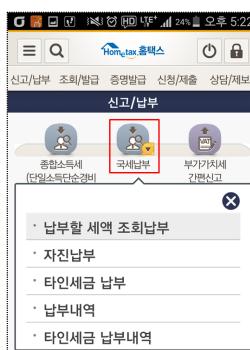
③ ‘납부하기’ 터치



-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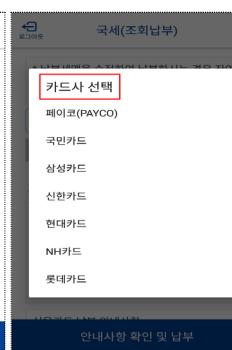
① 신고/납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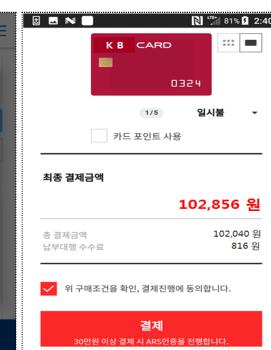
② 납부방법 선택



③ 간편결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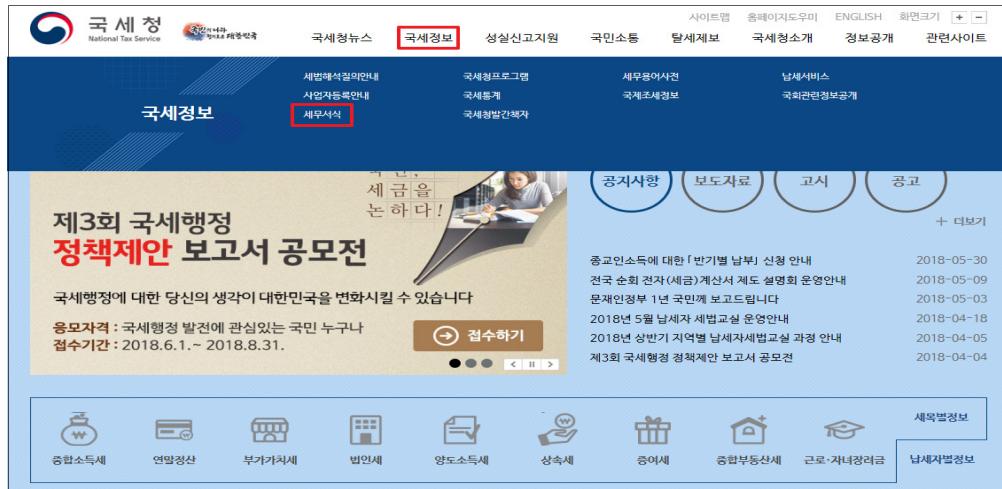
④ 최종 결제



## 4) 수동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방법

### □ 수동 납부서 서식 출력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 ⇒ ‘세무서식’을 클릭



국세정보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국세행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료일자: 2018.6.1.~2018.8.31. 접수하기

국세정보 프로그램  
국세통계  
국세청법간행자

세무용어사전  
국제조세정보  
국회관련정보공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  
공고  
+ 더보기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전국 순회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설명회 운영안내  
문화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18년 5월 납부자 세법교실 운영안내  
2018년 상반기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과정 안내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2018-05-30  
2018-05-09  
2018-05-03  
2018-04-18  
2018-04-05  
2018-04-04

세무서식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기거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별정보  
납세자별정보

- ‘영수증서’ 또는 ‘납부서’로 검색하여 납부서 서식 선택



세무용어사전

국제조세정보

납세서비스

국회관련정보공개

국세행정 126  
국세관련 모든 낭담은 국변법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점심때보는 24시간)

총글수 : 5 건. 페이지수 : 1 / 1

세법분류 서식번호 개정일자 서식명 첨부파일

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불이행자금과세법률상임부과징수규정고시	제3호	20090901	국제거래관련과태료납부통지서(영수증서)	
국세징수법..	제11호	20080429	영수증서	
소득세법..	제9호서식	20150223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징수기관용)	
국세징수법..	제9호	20150223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징수기관용)	
국세징수법..	제11호의2	20080429	영수증서/영수원부/영수증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세무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세무서식

##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는 방법

### ○ 접수증 출력화면에서 'Step2.신고내역' 클릭

### ○ 'Step2. 신고내역' 화면에서 해당신고내역의 납부서를 출력

##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가상계좌를 조회하는 방법

- 신고서 접수증에서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클릭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펼침 메뉴접기 제출여부 제출 완료 되었습니다. 미리보기

01. 일반과세 입력 02. 일반과세 03. 과세표준 04. 매입·경상 08. 신고서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여부 제출 완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기타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단위: 원)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 납부서 팝업창에서 국세계좌번호 확인

영수증서(납세자용)

(1면)

납부 번호(전자납부번호:0126-1901-1-41-26592133)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19 01	1	41	26592133	종로 세무서	101	011976	
상호 (성명)	(주) 국 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101-*****	회계년도	2019		
사업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년도/기분	2018년 2기분	원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세목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2019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1,000,000	가상계좌 (23: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2019.1.25 (예약이체불가)
		국 세 계 좌 0126-1901-1-41-26592133	신 한	562-1012-9935-42-1
		국 민 001-0922-8835-46-4	우 리	914-1563-5518-47-2
계	1,000,000	기 업 041-4735-4793-84-2	KEB하나	191-4157-3914-63-7

## ○ (참고)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강남	211	180616	마포	105	011840	역삼	220	181822
강동	212	180629	목포	411	050144	영덕	507	170189
강릉	226	150154	반포	114	180645	영동	302	090311
강서	109	012027	보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청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월	225	150183
경기광주	233	023744	부천	130	110246	영주	512	910378
경산	515	042330	북광주	409	060671	예산	311	930167
경주	505	170176	북대구	504	040772	용산	106	011947
고양	128	012014	북대전	318	023773	용인	142	002846
공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울산	610	160021
관악	145	024675	북인천	122	110233	원주	224	100269
광명	235	025195	북전주	418	002862	은평	147	026165
광주	408	060639	분당	144	018364	의정부	127	900142
구로	113	011756	삼성	120	181149	이천	126	130378
구미	513	905244	삼척	222	150167	익산	403	070425
군산	401	070399	상주	511	905260	인천	121	110259
금정	621	031794	서광주	410	060655	잠실	230	019868
금천	119	014371	서대구	503	040798	전주	402	070438
기흥	236	026178	서대문	110	011879	정읍	404	070441
김천	510	905257	서대전	314	081197	제주	616	120171
김포	234	023760	서부산	603	030546	제천	304	090324
김해	615	000178	서산	316	000602	종로	101	011976
나주	412	060642	서인천	137	111025	중랑	146	025454
남대구	514	040730	서초	214	180658	중부	201	011989
남대문	104	011785	성남	129	130349	중부산	602	030562
남양주	132	012302	성동	206	011905	진주	613	950435
남원	407	070412	성북	209	011918	창원	609	140669
남인천	131	110424	세종	320	025467	천안	312	935188
노원	217	001562	속초	227	150170	청주	301	090337
논산	308	080473	송파	215	180661	춘천	221	100272
대전	305	080486	수성	516	026181	충주	303	090340
도봉	210	011811	수영	617	030478	통영	612	140708
동고양	232	023757	수원	124	130352	파주	141	001575
동대구	502	040769	순천	416	920300	평택	125	130381
동대문	204	011824	시흥	140	001588	포천	231	019871
동래	607	030481	아산	319	024688	포항	506	170192
동수원	135	131157	안동	508	910365	해남	415	050157
동안양	138	001591	안산	134	131076	해운대	623	025470
동울산	620	001601	안양	123	130365	홍성	310	930170
동작	108	000181	양산	624	026194	홍천	223	100285
동청주	317	002859	양천	117	012878	화성	143	018351
마산	608	140672	여수	417	920313			

## 홈택스 상담 대표전화번호 운영

### □ 운영 내용

국세청홈택스 [www.mrtax.go.kr](http://www.mrtax.go.kr)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 홈택스안내 > 126 국세상담센터 상담안내

국세상담센터 상담안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126 번 이용안내**

**① 126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이용안내**

- 국세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법없이 126번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b>1 홈택스 상담</b>	<b>1 협급영수증</b>	1. 협급영수증 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상담센터 (1. 한국어, 2. 영어)
	<b>2 전자세금계산서</b>	1. 협급 및 e세로 이용안내 2. 세법상담을 위한 세부서 연결 3. ARS 협급 및 조회 4. 자주찾는질문
	<b>3 전자신고납부·증명발급</b>	상담사 연결
	<b>4 학자금상환</b>	상담사 연결
	<b>5 연말정산 간소화</b>	1.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2. 상담사 연결
	<b>6 비밀번호 등록</b>	1. 전자세금계산서 비밀번호 등록 2. 본인인증 ARS 비밀번호 등록
	1.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 부기기자세 3. 연말정산, 퇴직세 4. 종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5. 법인세 6. 국제조세 7. 상속·증여세 8.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 세정에 관한 물안·감의 0. 기타	
<b>2 세법상담</b>		
<b>3 납세자보호담당관실</b>	세부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b>4 납세 등 각종 제보</b>	1. 납세신고(음성녹음) 2. 신고상금(상금직원 연결) 3. 신고대상 및 조상금 안내	
유선전화 이용 시 전국 단일 시내전화 요금 적용		
<b>TIP</b> 일반 상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납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화 외에도, 서면, 인터넷( <a href="http://www.mrtax.go.kr">www.mrtax.go.kr</a> ), 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신고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번호 : ☎126 → 1번 → 3번

○ 운영기간 및 시간 : 2019. 1.1. ~ 1.25. (매일 09:00 ~ 18:00)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자주 찾는 문답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답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답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답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답변) '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8%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frac{\text{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text{일}}$   
 ·'18.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4일(7~12월)
-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답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답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자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시기 : (중소기업) '16.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견기업) '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답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 9.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답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133page 참고)
- ◆ 의제매입세액 공제(129page 참고) : 공제율 2/102
  - 음식점업은 개인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형장소는 4/104
  - 중소기업(조특령 §2)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4/104
-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130page 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전자신고세액공제(131page 참고)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133page 참고)
  - :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10.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times \frac{2}{102}$  (음식점업\*은 개인  $\frac{8}{108}$ , 법인  $\frac{6}{106}$ )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통 장소는 : 4/10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4/104

### ◆ 간이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times \frac{8}{108}$  (과세표준 4억원 이하  $\frac{9}{109}$ )
- 음식점업 중 과세유통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 4/104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 ◆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제외	반기매출액의 40%

구분	개인 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반기매출액 1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50%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65%

\*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음식업자는 2019.12.31.까지 우대한도 적용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1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에 한정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times \frac{3}{103}$

- 취득가액 한도액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times \frac{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 적용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times \frac{10}{110}$

-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2.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답변)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확정신고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750만원

### 13.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times \frac{10}{110}$
-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기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기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1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답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적용 제외 (16.1.1.0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  
(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 수령사업자 (세액공제대상은 아래 15번 참조)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매입세액 문제가 가능한지?

답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  
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부가령 §88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16.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17.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 18.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9.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정보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답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 2.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답변)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

#####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②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 [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19.1.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19.1.12.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19.1.12.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답변)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17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8.7.1~2019.6.30

\* 2018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9.7.1~2020.6.30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답변) '19.1.11.까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 작성 · 송달 ·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7.1.1. 이후 거래분)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예) '18.7.4. 발급한 경우 '18.7.6.~'19.1.11.까지 전송	0.5%	해당없음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예) '18.7.4. 발급한 경우 '19.1.11.까지 미전송	1.0%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답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흠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흠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0. 발급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 11.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답변)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 하여야 하며, 발급 · 전송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항목 · 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 1.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흠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한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흠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2. 국세청 흠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흠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흠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선택
  -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도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보안카드 또는 공인인증서(사업자법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흠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답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 답변) 홈택스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함

#### [ ID / 비밀번호 확인 방법 ]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 로그인을 클릭하고 좌측 하단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클릭하면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이 나옴

-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 개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찾기」 클릭하면 아이디의 「일부」를 보여줌 (개인정보 보호 차원)
-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발급 받기」를 클릭하면 신규비밀번호가 전송됨
    -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통해 재발급 가능(사업자는 이용불가)
    - \* 전송된 비밀번호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아닌 임시로 부여된 비밀번호이므로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조회/수정

##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전자신고는 흠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작성방법) 흠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오른쪽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또는 「전자신고 이용 방법」 참고

##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답변)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흠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19.1.25까지)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 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

##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 9.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세금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NTS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약 1달 소요) 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0.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흠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흠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 ① 흠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흠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흠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② 모바일흡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흠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11.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답변)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미리보기에서 신고서 출력 가능하며,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2.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답변)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불러오기) 작성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 13.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답변) 국세상담센터 ☎126(1번→3번) 이용하여 문의

\* 세법상담은 ☎126(2번)이며, 전화통화량이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14. 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15.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서식 선택화면에서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선택한 후 왼쪽 메뉴 ‘04. 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신고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총괄납부주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답변) 흠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서식선택 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 내용 앞쪽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오며,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금이자는 기타 매출로 자동 입력됩니다.

16-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중 인데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부분에 날짜입력이 안 됩니다.

답변) '일자 수정' 버튼을 먼저 클릭한 후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16-2.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을 입력하여 입력내용 추가를 했는데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답변) 입력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할 임차인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16-3. 신고서 작성 완료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보증금 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으나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는데 신고서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일 때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답변)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8.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

## 2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 · 입력됩니다.

##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 (현금영수증) 흠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흠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 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흠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22. 중고자동차 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공제율이 3/103으로 나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 서식에서 공제 10/110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23.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24.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25.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답변)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계산서 발급 내역은 '계산서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 서식선택' 화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제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26. 부가가치세 변환파일 제출 시 파일 찾아보기 후 파일형식 검증하기 클릭 후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암호 입력 팝업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로, 홈택스 화면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클릭하고 '선택' 탭에서 '파일복호화(NTS-CRYPTO)' '다운로드'를 클릭 · 실행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하면 됩니다.

## 27.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답변) 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으며,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모바일 홈택스에서 매출액만 입력하면 산출세액을 채워줍니다.

##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흠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 흠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 공인인증서로 흠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
- [타인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흠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답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365일	00:30~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
	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3.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 [ 전자신고분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확인(세액수정가능) ⇒ 납부하기 ⇒ 금융결제원 지로화면 ⇒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납부하기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확인

#### [ 납부확인 ]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납부내역 조회

### 4.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18.2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 5.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상계좌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 6. 간이과세자가 모바일 전자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흠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흠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7.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www.cardrotax.kr](http://www.cardrotax.kr))<sup>1)</sup> 또는 은행 CD/ATM기<sup>2)</sup>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1)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 2) 은행 CD/ATM기(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제외)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관련 문답사례 ]

#### ①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포인트 조회 및 사용가능카드, 차감액,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용카드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제한 카드사 〉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불가 : 광주 (기업카드는 수협, 씨티, NH채움도 불가)
- 개인카드 포인트 조회 불가 : 하나, 현대, NH채움
- 기업카드 포인트 조회 불가 : BC, 신한, 하나, 현대
  -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현대카드는 M포인트 적립대상카드만 국세 납부시 M포인트 사용 가능
  - 현대카드 M포인트는 온라인 납부 사이트 외에 창구/현장 수납, 무인수납기 (CD/ATM) 등에서 사용 불가

② 포인트 이용 납부시 포인트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 납부할 세액과 포인트 잔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 사용액은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됩니다.

(납부할세액 +납부대행수수료) < 잔여 포인트	전액 포인트로 결제
(납부할세액 +납부대행수수료) > 잔여 포인트	<p>포인트 전액 차감 후 잔여액은 일반 카드결제로 처리</p> <p>* (예시) 납부할 세액이 10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0Point인 경우 부족액은 신용 카드로 자동결제</p>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하며, 포인트로만 납부하려면 포인트 잔액과 납부금액 합계액 (납부세액+대행수수료)를 비교하여 포인트가 적으면 납부세액을 반드시 수정한 후 납부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2. 주요업종 신고서 작성사례



## 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의 ‘❶ 신고내용’ (1쪽)의 금액과 세부명세(3쪽)의 합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영세율매출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개별 항목별로 부속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기본사항 작성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정 <b>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b> <input type="checkbox"/> 기한후과세표준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신고기간 2018년 제2기 ( 7 월 1 일 ~ 12 월 31 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상호 (법인명)	국세빌딩	성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397-xxxx	324-xxxx	000-111-x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 신고서 제일 상단의 ‘확정’ 란에 체크(√) 합니다.

- 신고기간 작성

구분	작성내용
계속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2018년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li> <li>· (법인사업자) 2018년 제2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li> </ul>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제2기 사업개시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li> </ul>
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제2기 7월 1일(법인은 10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사업자는 신고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 사업자 기본사항은 충실히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할 경우 국세행정에 도움이 되는 소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를 권장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2. ① 신고내용 작성

(4쪽 중 제1쪽)

		① 신고내용		세율	세액
구 분		금 액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1) (2) (3) (4)	10 / 100 10 / 100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	(5) 타 (6)	0 / 100 0 / 100	
	예정신고누락분		(7)		
	대손세액	가감	(8)		
	합	계	(9)	(2)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고정자산 매입	(10) (10-1) (11)		
2) 매입세액	예정신고누락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 (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감계	(15)-(16)	(17)	(4)	
남부(한급)세액(매출세액(2)-(매입세액(4)))				(2)	
3) 경감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계		(20)	(2)	
4)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4)	
5) 예정고지세액			(22)	(4)	
6)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4)	
7)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4)	
8) 가산세액계			(25)	(4)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2)-(4)-(4)-(4)+(4)			(26)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1~9)

- 과세 (1)~(4)란 : 해당 신고대상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금액은 (1)란에,
  -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간주임대료 등)은 (4)란에 기재합니다.
  - 세액 란은 각각의 금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하여 적습니다.
- 영세율 (5)·(6)란 :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영세율 합계금액은 영세율매출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예정신고누락분 (7)란

-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신고서 4쪽 중 제3쪽(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4쪽 중 제3쪽)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기 타	(35)	0 / 100	
			합 계	(36)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 계	(39)		

## ○ 대손세액 가감 (8)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동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 매입세액(10~17)

- 세금계산서 수취분 (10) · (10-1) · (11)란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에,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 : 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특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시기 : '16.7.1.(중견기업은 '17.4.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예정신고누락분 (12)란

-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등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4쪽 중 제3쪽)
예정신고 누락 분 명 세	(7)매출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12)매입		기 타	(35)	0 / 100		
		합 계		(36)			
		세 금 계 산 서		(3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 계		(39)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란

-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란

-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파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 4쪽 중 제3쪽의 공제매입세액 세부 명세서를 우선 기재한 후 그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4쪽 중 제3쪽)		
		구 분	금 액	세 을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세 명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고정자산매입 (40)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합 계	(48)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40) · (41)란
  -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 의제매입세액 (42)란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 ·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 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times \frac{2}{102}$  (음식점업은 개인  $\frac{8}{108}$  ( $\frac{9}{109}$ ), 법인  $\frac{6}{106}$ )  
 \* 음식점업(개인)의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9/109를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통장소 : 4/10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4/104

## ◆ 공제한도

구 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2억 이하		
한 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제 외	반기매출액의 40%

구 분	개인 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1억 초과 2억 이하	반기매출액 1억 이하
한 도	반기매출액의 50%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65%

\* 법인 및 개인 음식업자는 2019.12.31.까지 우대한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43)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가능금액 한도가 있음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란

-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재고매입세액 (45)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변제대손세액 (46)란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공제받지 못할 세액 (16)란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 4쪽 중 제3쪽 (49)~(51)란의 해당란을 작성한 후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신고서 앞장의 (16)란에 적습니다.

(4쪽 중 제3쪽)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합 계	(52)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49)란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삭제 <2014.1.1>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절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 분 (50)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대손처분 받은 세액 (51)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3) 경감·공제세액(18~20)

####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란

- 전자신고 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 4쪽 중 제3쪽 (53)~(57)란의 해당란을 작성한 후 (58)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신고서 앞장의 (18)란에 적습니다.

(4쪽 중 제3쪽)				
(18)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 읊	세 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54)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5)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기타	(57)		
	합 계	(58)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전자신고세액공제 (53)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5)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앞쪽 ④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란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 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 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제조, 도매 사업자 등

#### 4) 예정신고 미환급세액(21)

-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 【유의】 예정신고 시 환급신고 세액을 실제 환급받았으나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예정고지세액(22) (개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 【유의】 휴업·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므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 세액을 적습니다.

#### 7)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8) 가산세액 계(25)

-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4쪽 중 제3쪽)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업자 미 등록 등	(59)		1 / 10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0)		1 / 100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61)		5 / 1,000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62)		뒤쪽참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5 / 1,000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64)		1 / 100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66)		3 / 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참조	
납부 불성실	(71)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합 계	(77)			

**(25) 가산세 명세**

- 사업자미등록 등 가산세 (59)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60)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6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62)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구 분	가 산 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6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6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65)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66)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67) · (68)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구 分	가 산 세	기재란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68)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67)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 과소·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69) · (7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구 분	가 산 세	기재란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7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69)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 납부불성실 가산세 (7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frac{3\times(\text{경과일수})}{1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72)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 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73)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74)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7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 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거래계좌 지연입금 가산세(7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 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  $\times \frac{3\times(\text{경과일수})}{10,000}$ 입니다.



### 3. ❷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b>❷ 국세환급금 계좌신고</b>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 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❸ 폐업 신고

<b>❸ 폐업 신고</b>	폐업일		폐업 사유	
----------------	-----	--	-------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그 밖의 개별사유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를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등의 폐업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5. ❹ 과세표준 명세 (27 ~ 31)

❹ 과세표준 명세					
업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액	
(27)					
(28)					
(29)					
(30) 수입금액 제외					
(31) 합계					

- 과세표준 합계액(9)란을 업태, 종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0)수입금액 제외 란은 고정자산 매각, 직매장 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 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은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6.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 (78 ~ 83)

(4쪽 중 제3쪽)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드 번호	금 액
	(78)			
	(79)			
	(80) 수입금액 제외			(81) 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 ○ 면세사업 수입금액(78~8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78) · (79)란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81)란에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82~83)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82)란에 적습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83)란에 적습니다.

## 7. 매출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흠택스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흡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작성방법은 서식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예시

- 전자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 매출처 수 : 3개, 매수 : 8매, 공급가액합계 : 3억원, 세액합계 : 3천만원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만 기재,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분 및 수동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 매출처 수 : 2개, 매수 : 5매, 공급가액합계 : 2억원, 세액합계 : 2천만원

구 분	거래처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미전송분	(주)서울상사	2	100,000,000	10,000,000
수동발급분	(주)종로상회	3	100,000,000	10,000,000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7) 매출 처수	(8) 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0)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500	000	000	50	000	000
합계	5	1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3	8			30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8			300	000	000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2	5			20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2	5			200	000	000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11) 번호	(12) 사업자등록번호	(13) 상호(법인명)	(14) 매수	(15)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00	000	000	10	000	000	
1	101-81-*****	(주)서울상사	2							
2	201-81-*****	(주)종로상회	3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년 월 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출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고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1																	
2																	
3																	
4																	
5																	

⑰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지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⑫ · 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별지 제3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별지 제38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⑯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년 월 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입 처수	⑧ 매 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	백	만	천	일	조	십	백	만	천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 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고	
				조	십	백	만	천	일	조	십	백	만
1													
2													
3													
4													
5													

⑰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뒤쪽)

###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 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별행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별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⑫・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 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별지 제3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감)』[별지 제39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⑯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2. 주요업종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
- 음식업
- 도·소매업
- 건설업
- 제조업



##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사례 ]

### 부동산임대업

#### 자료1 기본사항

-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 (상 호) 국세빌딩 (부동산/임대)
- (성 명) 김국세

#### 자료2 부동산 임대 내역 (천원)

층	호	면적	상호	등록번호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 임대료
1	101	100	종로상회	101-11-xxxx			40,000	4,000
1	102	60	종로금방	101-22-xxxx			30,000	3,000
2	201	95	종로식당	101-33-xxxx			20,000	2,000
2	202	55	종로건설	101-44-xxxx			10,000	1,000
3	301	140	종로내과	101-90-xxxx		'18.2.28	50,000	1,000
3	302	140	종로기원	101-55-xxxx	'18.3.1		60,000	1,000

#### 자료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종로 건물관리(101-01-xxxxx) 6매
  - 공급가액 6,000천원(부가가치세 600천원)

#### 기타

- (예정고지 세액) 3,000천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r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 예정 [√] 확정  
 [ ] 기한후과세표준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2기 ( 7 월 1 일 ~ 12 월 31 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국세빌딩	성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397-xxxx 324-xxxx 000-111-xxxx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① 신고 내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1) 66,000,000	10 / 100	6,600,000
	매입지불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905,534	10 / 100	190,553
매입 세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타	(6)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대손세액 가감	(8)		
	합계	(9) 67,905,534	(2)	6,790,553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6,000,000		600,000
경감·공제세액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정신고 누락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 (10)-(10-1)+(11)+(12)+(13)+(14)	(15) 6,000,000		6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감계 (15)-(16)		(17) 6,000,000	(4)	6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2)-(매입세액(4)))			(4)	6,190,553
경감·공제세액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계	(20)	(4)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4)	
예정고지세액		(22)	(4)	3,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4)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4)	
가산세액계		(25)	(4)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4)-(4)-(4)-(4)+(4)		(26)		3,190,553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업 신고	폐업일	폐업 사유		

④ 과세표준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액	2019년 1월 20일
(27) 부동산	임대			67,905,534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28)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9)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0) 수금액제외					종로세무서장 귀하
(31) 합계				67,905,534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 × 297mm[백상지 (80g/m <sup>2</sup> ) 또는 중질지(80g/m <sup>2</sup> )]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종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❶ 신고내용란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 ~ (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순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10) ~ (10-1) ~ (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기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날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 매입자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파크올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지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번제 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속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순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기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 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❸ 폐업신고란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❹ 과세표준명세란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예정신고 누락 분 명 세	(7)매출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12)매입	기 타 (35)		0 / 100	
		합 계 (36)			
		세 금 계 산 서 (37)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합 계 (39)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4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0)			
		고정자산매입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합 계 (48)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합 계 (52)				
(18)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자신고세액공제 (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54)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5)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기 타 (57)				
	합 계 (58)				
(25)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 / 100	
		지연수취 (61)		5 / 1,000	
		미발급 등 (62)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3)		5 / 1,000	
		미전송 (64)		1 / 100	
		제 출 불성실 (65)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66)		3 / 1,000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신 고 불 성 실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 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 참조	
		합 계 (7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78)				
	(79)				
	(80) 수입금액 제외			(81)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작성방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 ~ (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0) ~ (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해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기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기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기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종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갑기상기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갑이자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인본 계산한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7)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기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기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기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기액의 2%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날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날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기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 : (7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기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기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frac{3 \times (\text{경과일수})}{1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 협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 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기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frac{3 \times (\text{경과일수})}{10,000}$ 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78) ~ (79)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b>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b> 2018년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처리기간 즉시
(1)부동산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2)상호 (소유자 성명)	국세빌딩	
(3)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4)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수입금액 내용(기간 7월 ~ 12월) (단위: 원)													
임대사항			(8) 임대면적 (m <sup>2</sup>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			
(5)동	(6)층	(7)호		(9)상호 (성명)	(10)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11)입주일	(12)갱신일	(13)퇴거일	(14)보증금	(15)월 임대료	(16)합계	(17)보증금 이자(계)	(18)월임대료 (계)
합계			590						210,000,000	12,000,000	67,905,534	1,905,534	66,000,000
1	1	101	100	종로상회	101-11-xxxxx				40,000,000	4,000,000	24,362,959	362,959	24,000,000
1	1	102	60	종로금방	101-22-xxxxx				30,000,000	3,000,000	18,272,219	272,219	18,000,000
1	2	201	95	종로식당	101-33-xxxxx				20,000,000	2,000,000	12,181,479	181,479	12,000,000
1	2	202	55	종로건설	101-44-xxxxx				10,000,000	1,000,000	6,090,740	90,740	6,000,000
1	3	301	140	종로내과	101-90-xxxxx		2018.8.28		50,000,000	1,000,000	2,453,699	453,699	2,000,000
1	3	302	140	종로기원	101-55-xxxxx	2018.9.1			60,000,000	1,000,000	4,544,438	544,438	4,000,000

## 작성방법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1) ~ (3) :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 (7) : 계약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 층, 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B”로 구분 표시합니다.

※ 작성예시1): (층) 지하1층을 임대하는 경우 ☐ B1

작성예시2): (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을 임대하는 경우 ☐ 1-3

작성예시3): (호) 201호, 202호, 203호, 205호를 임대하는 경우 ☐ 201-203, 205

(8) : 계약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9)~(10) :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13) : 입주일 · 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 ·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14)~(15)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 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16) : 보증금이자(17)와 월임대료(18)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연1.8%)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 (예시)  $40,000,000 \times 0.018(\text{이자율}) \times 184(2\text{기 확정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div 365 = 362,959$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하여 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8) : 월임대료(계)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월임대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빌딩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출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합 계	6	30			66	000	000					6	6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6	30			66	000	000				6	6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6	30			66	000	000				6	600	000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고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1	101-11-xxxxxx	종로상회	6			24	000	000			2	400	000				
2	101-22-xxxxxx	종로금방	6			18	000	000			1	800	000				
3	101-33-xxxxxx	종로식당	6			12	000	000			1	200	000				
4	101-44-xxxxxx	종로건설	6			6	000	000				600	000				
5	101-90-xxxxxx	종로내과	2			2	000	000				200	000				

(17) 관리번호(매출)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별지 제38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쪽

⑯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빌딩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수	(9) 공급가액				(10) 세 액					
			조	십	백	만	천	일	조	십	백	만
합 계	1	6			6	000	000				6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 급 받 은 분	1	6		6	000	000				600	000
	주민등록번호 발 급 받 은 분											
	소 계	1	6		6	000	000				600	000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1) 번호	(12) 사업자 등록번호	(13) 상 호 (법인명)	(14) 매수	(15) 공급가액				(16) 세 액				비고
				조	십	백	만	천	일	조	십	백
1	101-01-xxxxx	종로건물관리	6		6	000	000				600	000
2												
3												
4												
5												

(17)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사례 ]

### 음식업

#### 자료1 기본사항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 상 호 : 국세식당 (음식/한식)
- 성 명 : 김국세

#### 자료2 매출내역

- (신용카드) 공급대가 113,100천원  
(현금영수증) 공급대가 45,300천원
- (현금) 공급가액 11,000천원, 부가가치세액 1,100천원

#### 자료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국세식품	101-01-xxxxx	3	30,000	3,000	
주방기계	101-01-xxxxx	1	10,000	1,000	기계장치

#### 자료4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천원)

카드번호	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세액
1000-2000-xxxx-xxxx	102-02-xxxxx	6	1,500	150
1000-2000-xxxx-xxxx	101-90-xxxxx	3	5,400	농산물

#### 자료5 매입계산서 수취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매입금액	비고
종로상회	101-xx-xxxxx	3	27,000	농산물

#### 기타

- (예정고지 세액) 2,000천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 예정 [√] 확정  
[ ] 기한후과세표준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 2 기 (7 월 1 일 ~ 12 월 31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국세식당	성 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397-xxxx 324-xxxx 000-111-xxxx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144,000,000	10 / 100	14,4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1,000,000	10 / 100	1,100,000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대 손 세 액 가 감				
합 계 (9)		155,000,000	(⑨)	15,5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30,000,000		3,000,00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33,900,000		2,825,229
합 계 (10)-(10-1)+(11)+(12)+(13)+(14)		(15) 73,900,000		6,825,229
공제 받지 못 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73,900,000	(⑪)	6,825,229
납 부 (환급) 세 액 ( 매 출 세 액 ⑨ - 매 입 세 액 ⑪ )				8,674,771
경감 ·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158,400,000		2,059,200
	합 계 (20)		(⑨)	2,059,200
	예 정 신 고 미 환급 세 액	(21)	(⑨)	
	예 정 고 지 세 액	(22)	(⑨)	2,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⑨)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⑨)	
가 산 세 액 계		(25)	(⑨)	
차감 ·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⑨-⑧-⑪-⑪-⑨-⑨+⑪)		(26) 4,615,571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❸ 폐업 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	-----	------

❹ 과세표준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영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 태	종 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음식	한식			155,000,000
(28)				
(29)				
(30) 수입세액제외				
(31) 합 계				155,000,000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 <sup>2</sup> ) 또는 중질지 (80g/m <sup>2</sup> )]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❶ 신고내용란

- (1) ~ (4) :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 ~ (6) :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 :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8)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10) ~ (10-1) ~ (11)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짚게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 (12) :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 :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시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 :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연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번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18)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 :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 :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5) :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❹ 과세표준 명세란

- (27) ~ (31) :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기 타	(35)	0 / 100	
	(12)매입	합 계		(36)		
		세 금 계 산 서		(3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 계		(39)		
(14) 그 밖의 공 제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령명세서 제출분	수 일 반 매 입	(40)	1,500,000		150,000
		고정자산매입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32,400,000	뒤쪽 참조	2,675,229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합 계		(48)	33,900,000		2,825,229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18)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명세	합 계		(52)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25) 가산세 명세	기 타		(57)			
	합 계		(5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 / 100		
		지연수취	(61)	5 / 1,000		
		미발급 등	(62)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3)	5 / 1,000		
		미전송	(64)	1 / 100		
		제 출 불 성 실	(65)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 연 제 출	(66)	3 / 1,000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 표 준신 고 불 성 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 성 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 성 실		(74)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합 계		(7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78)					
	(79)					
	(80)	수입금액 제외				
				(81)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27,000,000	

## 작성방법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 ~ (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40) ~ (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종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기신약지진단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정상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0):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인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금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8)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경우 : 공급가액의 2%
-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금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금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 (66): 매출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7) ~ (6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69) ~ (7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7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10,000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3): 현금영수증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자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  $\times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78) ~ (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양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청구합니다.
- (82):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청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입 처수	⑧ 매 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2	4			40	000	000			4	0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2	4			40	000	000			4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2	4			40	000	000			4	000	000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 호 (법인명)	⑭ 매수	⑯ 공급가액						⑯ 세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1	101-01-xxxxx	국세식품	3			30	000	000			3	000	000				
2	101-01-xxxxx	주방기계	1			10	000	000			1	000	000				
3																	
4																	
5																	

⑰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13.2.2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2기)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x	(2)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3) 성명(대표자)	김 국 세	(4) 사업장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5)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6) 작성일자	2019년 1월 20일

### 2. 매입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수	(9) 매 입 금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1	3			27	0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받은분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1	3			27	000	000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 번호	(11) 사업자 등록번호	(12)상호 (법인명)	(13) 매수	(14) 매 입 금 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1	101-xx-xxxx	종로상회	3			27	000	000	
2									
3									
4									
5									

( )쪽

(15)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018년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국세식당	②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③ 업태	음식	④ 종목	한식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 합계	1	10,000,000	1,000,000	
⑥ 건물 · 구축물				
⑦ 기계장치	1	10,000,000	1,000,000	
⑧ 차량운반구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월 20 일

제출자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 · 구축물 · 기계장비 ·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 · 기계 및 장비 ·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2018년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앞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101-01-xxxxx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④ 합 계	9	6,900,000	150,000
⑤ 현금영수증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⑦ 사업용 신용카드			
⑧ 그 밖의 신용카드	9	6,900,000	150,000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1000-2000-xxxx-xxxx	102-02-xxxxxx	6	1,500,000	150,000
2	1000-2000-xxxx-xxxx	101-90-xxxxxx	3	5,400,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별지 제16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②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③ 업태	음식	④ 종목	한식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2	6	32,400,000		2,675,229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1	27,000,000	9/109	2,229,358
	⑫ 신용카드 등	1	5,400,000	9/109	445,871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⑯ 당기 매입액	⑰ 공제대상금액 (=⑯과 ⑯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⑯ 확정분	⑰ 한도율	⑯ 한도액		
155,000,000		155,000,000	60%	93,000,000	32,400,000	32,400,000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⑯ 공제(납부)할 세액 (=⑯-⑯)
⑯ 공제율	⑯ 공제대상세액	⑯ 합계	⑯ 예정 신고분	⑯ 월별 조기분	
9/109	2,675,229				2,675,229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억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억년 매입액			⑯ 공제대상금액 (=⑯과 ⑯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⑯ 합계	⑯ 제1기	⑯ 제2기	⑯ 한도율	⑯ 한도액	⑯ 합계	⑯ 제1기	⑯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⑯ 공제(납부)할 세액 (=⑯-⑯)
⑯ 공제율	⑯ 공제대상세액	⑯ 총 합계	⑯ 제1기	⑯ 제2기	⑯ 월별 조기분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⑯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⑯ 건수	⑯ 품 명	⑯ 수 량	⑯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9년 1월 20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2018년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②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③ 사업장 소재지 종로2가 xxx	④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

구분	⑤ 합계	⑥ 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⑦ 현금영수증
합계	158,400,000	113,100,000	45,300,000
과세 매출분	158,400,000	113,100,000	45,300,000
면세 매출분			
봉사료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

⑧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⑨ 계산서 발급금액
--------------	------------

### 작성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⑤~⑦):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⑧·⑨): ⑧ 세금계산서란은 ⑤ 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기입하고, ⑨ 계산서 발급금액란은 ⑤ 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사례 ]

### 도·소매업

#### 자료1 기본사항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 상 호 : 국세상사 (도소매/가전제품)
- 성 명 : 김국세

#### 자료2 매출내역

- (도매) 165,000천원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종로물산	101-11-xxxxxx	6	135,000	13,500	(주1)
종로무역	101-22-xxxxxx	1	10,000	0	영세율

(주1) 세금계산서 발급액 중 신용카드 발행금액 포함 (공급가액 30,000천원)

- 영세율 현금매출 공급가액 20,000천원

- (소매) 23,000천원

- (신용카드) 공급가액 10,000천원, 부가가치세 1,000천원
-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10,000천원, 부가가치세 1,000천원
- (현금) 과세매출 공급가액 3,000천원, 부가가치세 300천원

#### 자료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성실제품	101-01-xxxxxx	3	120,000	12,000	(주2)
성실자동차	101-02-xxxxxx	1	10,000	1,000	비영업용차

\* (주2) 기계장치(공급가액 10,000천원, 부가가치세 1,000천원) 포함

#### 자료4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천원)

카드번호	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세액
2000-3000-xxxx-xxxx	103-03-xxxxxx	6	1,500	150

#### 기타

- (예정고지 세액) 2,000천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신고서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국세상사	성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397-xxxx	324-xxxx 000-111-xxxx
전자우편 주소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① 신고 내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35,000,000	10 / 100	13,500,000
	매입자별별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20,000,000	10 / 100	2,0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3,000,000	10 / 100	30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10,000,000	0 / 100	
	기	(6)	20,000,000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188,000,000	(%)	15,8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10)	120,000,000	12,000,00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1,500,000		150,000
	합 계 (10)-(10-1)+(11)+(12)+(13)+(14)	(15)	131,500,000		13,150,000
공제 받지 못 할 매입세액			(16)	10,000,000	1,000,000
차 감 계 (15)-(16)			(17)	121,500,000	(%) 12,150,000
남부(한급)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3,650,000	
경감 ·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22,000,000		286,000
	합 계	(20)	(%)	286,000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	
예정고지세액			(22)	(%)	2,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가산세액계			(25)	(%)	
차감 ·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8)-(19)-(20)-(21)-(22)-(23)-(24)+(25) )			(26)		1,364,0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③ 폐업 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④ 과세표준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액	2019년 1월 20일
(27) 도매	기본 제품			165,000,000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28) 소매	기본 제품			23,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9)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0) 수금액제외					종로세무서장 귀하
(31) 합 계				188,000,000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 × 297mm [백상지 (80g/m <sup>2</sup> ) 또는 중질지 (80g/m <sup>2</sup> )]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충광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❶ 신고내용란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 ~ (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10) ~ (10-1) ~ (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지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면세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손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동으로 사용된 공동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 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기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❸ 폐업신고란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❹ 과세표준 명세란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 수입금액세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예정신고 누락 분 명세	(7) 매출	과세 세금계산서 (32)		10 / 100	
		기타 (33)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34)		0 / 100	
	(12) 매입	기타 (35)		0 / 100	
		합계 (36)			
		세금계산서 (37)			
(14)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계 (39)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40)	1,500,000		150,000
		고정자산매입 (41)			
	의제매입세액 (42)			뒤쪽 참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43)			뒤쪽 참조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고매입세액 (45)				
	변제대손세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합계 (48)	1,500,000			150,000
(18)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10,000,000			1,000,00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손처분받은세액 (51)				
	합계 (52)	10,000,000			1,000,000
(25) 가산세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사업자미등록등 (59)			1 / 10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 (60)			1 / 100	
	지연수취 (61)			5 / 1,000	
	미발급등 (62)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5 / 1,000	
	발급영세전송 미전송 (64)			1 / 100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합계표 지연제출 (66)			3 / 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면세사업 수입금액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부 불성실 (71)			뒤쪽 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 참조	
	합계 (77)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78)					
(79)					
(80)	수입금액 제외				
		(81) 합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 · (38) :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40) · (41) :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42) :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기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기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기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3)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감)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4) :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기상자리제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5) : 기아파사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6)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정리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 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4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0)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 분으로 인한 계산한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51)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5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 (54)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55)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8)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56)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 (59)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0)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2)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기액과 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기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기액의 2%
- (6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5)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 (66) : 매출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7) · (68)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기산세 :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기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69) · (7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파소·초과환급신고 기산세 :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파소·초과환급신고 기산세 : 납부세액의 1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10,000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 (72)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3)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4) :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기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자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 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7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78) · (79)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었습니다.
- (82) : 부기부처 세가 과세되는 일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상사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출 처수	(8) 매수	(9) 공급가액					(10) 세 액							
			조	십	역	백	만	천	일	조	십	역	백	만	천
합 계	2	7				145	000	000				13	5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2	7			145	000	000				13	5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2	7			145	000	000				13	500	000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1) 번호	(12) 사업자 등록번호	(13) 상호 (법인명)	(14) 매수	(15) 공급가액					(16) 세액					비고			
				조	십	역	백	만	천	일	조	십	역	백	만	천	일
1	101-11-xxxxx	종로물산	6			135	000	000				13	500	000			
2	101-22-xxxxx	종로무역	1			10	000	000						0			
3																	
4																	
5																	

(17)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55555	② 상호(법인명)	국세상사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555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수	(9) 공급가액					(10) 세 액						
합 계		2	4	조	십	백	만	천	일	조	십	백	만	천	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130	000	000			13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와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2	4			130	000	000			13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2	4			130	000	000			13	000	000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⑯ 관리번호(매입)

1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줄직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국세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③ 업태	도매, 소매	④ 종목
		가전제품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 합계	1	10,000,000	1,000,000	
⑥ 건물 · 구축물				
⑦ 기계장치	1	10,000,000	1,000,000	
⑧ 차량운반구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월 20 일

제출자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 · 구축물 · 기계장비 ·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 · 기계 및 장비 ·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101-01-xxxxx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④ 합 계	6	1,500,000	150,000
⑤ 현금영수증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⑦ 사업용 신용카드			
⑧ 그 밖의 신용카드	6	1,500,000	150,000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000-3000-xxxx-xxxx	103-03-xxxxxx	6	1,500,000	15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별지 제16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3.1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국세상사	성명(대표자)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1	10,000,000	1,000,000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합계	1	10,000,000	1,000,000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일련 번호	파세·면세사업등 공동매입		⑫ 총공급가액 등	⑬ 면세공급가액 등	⑭ 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1					
2					
3					
4					
5					
합계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일련 번호	⑯ 총공통매입 세액	⑯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⑯×⑯)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⑰-⑱)
1					
2					
합계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일련 번호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㉑ 경감률[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㉑×㉒)
1				
2				
합계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상사	②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③ 사업장 소재지 종로2가 xxx	④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

구분	⑤ 합계	⑥ 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⑦ 현금영수증
합계	55,000,000	44,000,000	11,000,000
과세 매출분	55,000,000	44,000,000	11,000,000
면세 매출분			
봉사료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

⑧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33,000,000	⑨ 계산서 발급금액	
--------------	------------	------------	--

### 작성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⑤~⑦):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⑧·⑨): ⑧ 세금계산서란은 ⑤ 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기입하고, ⑨ 계산서 발급금액란은 ⑤ 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 활용품)]

##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사례 ]

### 건설업

#### 자료1 기본사항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 상 호 : 국세건설 (건설/신축판매)
- 성 명 : 김국세

#### 자료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 1, 매수 3)			200,000	20,000	
종로물산	101-11-xxxxx	3	70,000	7,000	
종로무역	101-22-xxxxx	1	30,000	3,000	

#### 자료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 2, 매수 30)			200,000	20,000	(주1)
성실가구	321-21-xxxxx	1	10,000	1,000	김기성(가구)

(주1) 면세사업관련 매입 (15매, 공급가액 40,000천원, 부가가치세액 4,000천원)  
 과·면세 공통매입 (공급가액 41,500천원, 부가가치세액 4,150천원)

#### 자료4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천원)

카드번호	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세액
2000-3000-xxxx-xxxx	103-03-xxxxx	6	1,500	150

#### 기타

- (예정고지 세액) 6,000천원
- (면세수입금액) 건설(국민주택건설) 100,000천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 예정 [√] 확정  
[ ] 기한후과세표준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4쪽 중 제1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신고기간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국세건설	성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01-01-011-xxx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397-xxxx	사업장 주소 324-xxxx 000-111-xxxx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① 신고 내용					
구 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1) (2) (3) (4)	300,000,000	10 / 100 10 / 100 10 / 100 10 / 100	30,000,000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대 손 세 액 가 감 합	(5) (6) (7) (8) (9)	0 / 100 0 / 100		
매입 세액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분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고정자산 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합 계 (10)-(10-1)+(11)+(12)+(13)+(14)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차 감 계 (15)-(16)	(10) (10-1) (11) (12) (13) (14) (15) (16) (17)	200,000,000 10,000,000 1,500,000 211,500,000 50,375,000 161,125,000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20,000,000 1,000,000 150,000 21,150,000 5,037,500 16,112,500
	남부(한급) 세액 (매출세액 ⑨ - 매입세액 ⑩)		⑨ ⑩		13,887,500
경감 · 공제 세액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합	(18) (19) (20)		⑯ ⑰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가산세액계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한급받을세액) (⑨-⑩-⑪-⑫-⑬-⑭-⑮-⑯+⑰)	(21) (22) (23) (24) (25) (26)	⑯ ⑰ ⑯ ⑯ ⑯ ⑯		6,000,000 7,887,5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한급받을세액)		⑯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③ 폐업 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	-----	------

④ 과세표준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액
(27) 건설	신축 판매			300,000,000
(28)				
(29)				
(30) 수입·판매 제외				
(31) 합계				300,000,000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 <sup>2</sup> ) 또는 중질지 (80g/m <sup>2</sup> )]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❶ 신고내용란

- (1) ~ (4) :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 ~ (6) :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 :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8)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10) ~ (10-1) ~ (11)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짚게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 (12) :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 :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 :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파크리밍피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지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속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동으로 사용된 공동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 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18)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 :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기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 :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5) : 신고한 내용에 기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❹ 과세표준 명세란

- (27) ~ (31) : 과세표준 합계액(9)을 유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 수입금액세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7) 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금계산서 (32)		10 / 100	
		기타 (33)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34)		0 / 100	
		기타 (35)		0 / 100	
	(12) 매입	합계 (36)			
		세금계산서 (37)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계 (39)			
(14)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14)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일반매입 (40)	1,500,000		150,000
		령명세서제출분 고정자산매입 (41)			
		의제매입세액 (42)		뒤쪽 참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43)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고매입세액 (45)			
		변제대손세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합계 (48)	1,500,000		150,000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40,000,000		4,000,00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10,375,000		1,037,500
(18) 그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18) 그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대손처분받은세액 (51)			
		합계 (52)	50,375,000		5,037,500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자신고세액공제 (53)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54)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55)			
(25) 가산세명세	(25) 가산세명세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6)			
		기타 (57)			
		합계 (5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사업자미등록등 (59)		1 / 100	
		지연발급등 (60)		1 / 100	
		지연수취 (61)		5 / 1,000	
		미발급등 (62)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63)		5 / 1,000	
		발급명세전송 (64)		1 / 100	
면세사업 수입금액	면세사업 수입금액	세금계산서지출불성실 (65)		5 / 1,000	
		합계표지연제출 (66)		3 / 1,000	
		신고불성실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신고불성실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부불성실 (71)		뒤쪽 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불성실 (74)		1 / 100	
계산서발급 및수취명세	계산서발급 및수취명세	매입자납부특례거래계좌미사용 (75)		뒤쪽 참조	
		거래계좌지연입금 (76)		뒤쪽 참조	
		합계 (77)			
		업태	종 목	코드번호	금액
(78) (79) (80)	(78) (79) (80)	건설	국민주택건설		100,000,000
		수입금액제외			
				(81) 합계	100,000,000

## 작성 방법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 ~ (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함께하여 적을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40) ~ (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형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해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감)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기상자자산을 공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6):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순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순금액에 관련된 대순세액을 적습니다.
-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인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순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순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6)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지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무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66)에 적습니다.
-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7) ~ (6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69) ~ (7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7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립트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10,000 \times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78) ~ (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입·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건설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출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합 계	3	5			300	000	000				30	0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1	3		200	000	000				2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1	3		200	000	000				20	000	000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2	4		100	000	000				1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2	4		100	000	000				10	000	000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고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1	101-11-xxxxxx	종로물산	3		70	000	000				7	000	000		
2	101-22-xxxxxx	종로무역	1		30	000	000				3	000	000		
3															
4															
5															

⑰ 관리번호(매출)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건설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 수	(9) 공급가액					(10) 세 액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합 계	3	31			210	000	000			21	000	000	000	0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2	30		200	000	000			20	000	000	00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2	30		200	000	000			20	000	000	000	000	000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1	1		10	000	000			1	000	000	00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1	1		10	000	000			1	000	000	000	000	000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1) 번호	(12) 사업자 등록번호	(13) 상 호 (법인명)	(14) 매수	(15) 공급가액					(16) 세액					비고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1	321-21-xxxxx	성실가구	1			10	000	000			1	000	000	000	000	000	
2																	
3																	
4																	
5																	

(17)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국세건설	②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③ 업태 건설	④ 종목 건축공사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 합계	1	10,000,000	1,000,000	
⑥ 건물 · 구축물				
⑦ 기계장치				
⑧ 차량운반구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	10,000,000	1,0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월 20 일

제출자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 · 구축물 · 기계장비 ·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 · 기계 및 장비 ·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 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앞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건설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101-01-xxxxx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④ 합 계	6	1,500,000	150,000
⑤ 현금영수증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⑦ 사업용 신용카드			
⑧ 그 밖의 신용카드	6	1,500,000	150,000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000-3000-xxxx-xxxx	103-03-xxxxxx	6	1,500,000	15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별지 제16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3.1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국세건설	성명(대표자)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15	40,000,000	4,000,000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합계	15	40,000,000	4,000,000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일련 번호	과세·면세사업등 공통매입		⑫ 총공급가액 등	⑬ 면세공급가액 등	⑭ 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1	41,500,000	4,150,000	400,000,000	100,000,000	1,037,500
2					
3					
4					
5					
합계	41,500,000	4,150,000	400,000,000	100,000,000	1,037,500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일련 번호	⑮ 총공통매입 세액	⑯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⑮×⑯)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⑰-⑱)
1					
2					
합계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일련 번호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㉑ 경감률[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㉑×㉒)
1				
2				
합계				

210mm×297mm [백지면 80g/m<sup>2</sup> (재활용품)]

##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사례 ]

### 제조업

#### 자료1 기본사항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 상 호 : 국세공업사 (제조/가전제품)
- 성 명 : 김국세

#### 자료2 매출내역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 1, 매수 1)			100,000	10,000	
국세산업	123-45-xxxxx	2	38,000	3,800	
국세기업	987-65-xxxxx	1	10,000	0	영세율

- (신용카드) 공급가액 20,000천원, 부가가치세 2,000천원
- (직수출) 영세율 매출 공급가액 20,000천원

#### 자료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천원)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 2, 매수 3)			80,000	8,000	(주1)
성실공업사	321-21-xxxxx	1	50,000	5,000	

(주1) 기계장치(공급가액 10,000천원, 부가가치세 1,000천원)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비용(1매, 10,000천원, 부가가치세 1,000천원)

#### 자료4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천원)

카드번호	등록번호	건수	공급가액	세액
2000-3000-xxxx-xxxx	103-03-xxxxx	6	1,500	150

#### 기타

- (예정고지 세액) 2,000천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 예정 [√] 확정  
[ ] 기한후과세표준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4쪽 중 제1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신고기간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국세공업사	성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지우편 주소	324-xxxx	000-111-xxxx

① 신고 내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38,000,000	10 / 100 13,800,000
	매입자별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20,000,000	10 / 100 2,0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 / 100
및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5)	10,000,000	0 / 100
	기타	(6)	20,000,000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대손세액	가감	(8)	
	합계	(9)	188,000,000	⑨ 15,800,000
매입 세액	일반매입	(10)	120,000,000	12,000,000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
	예정신고 누락분	(12)		
경감 · 공제 세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	(14)	1,500,000	150,000
	합계 (10)-(10-1)+(11)+(12)+(13)+(14)	(15)	131,500,000	13,150,000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16)	10,000,000	1,000,000
	차감 계	(15)-(16)	121,500,000	⑩ 12,150,000
	남부(환급)세액 (매출세액 ⑨ - 매입세액 ⑩)			3,650,000
에정신고 미환급세액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계	(20)		⑩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		⑩
	예정고지세액	(22)		⑩ 2,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⑩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⑩
	가산세액계	(25)		⑩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⑩-⑨-⑩-⑩-⑩-⑩+⑩+⑩)	(26)		1,650,0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③ 폐업 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	-----	------

④ 과세표준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액
(27) 제조	기적 제품			188,000,000
(28)				
(29)				
(30) 수금액제외				
(31) 합계				188,000,000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 × 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❶ 신고내용란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 ~ (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10) ~ (10-1) ~ (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기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짚게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은 (10-1)란에 적습니다.
-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행사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파크올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면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속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동으로 사용된 공동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기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❷ 국세환급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❹ 과세표준 명세란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예정신고 누락 분 명세	(7) 매출	과세 세금계산서 (32)		10 / 100	
		기타 (33)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34)		0 / 100	
	(12) 매입	기타 (35)		0 / 100	
		합계 (36)			
		세금계산서 (37)			
(14) 그 밖의 공 제 매입세액 명세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계 (39)			
	(40) 그 밖의 공 제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일반매입 (40)	1,500,000		150,000
		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41)			
		의제매입세액 (42)		뒤쪽 참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43)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45)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재고매입세액 (45)			
		변제대손세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합계 (48)	1,500,000		150,000
(18)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49)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10,000,000		1,000,00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손처분받은세액 (51)			
		합계 (52)	10,000,000		1,000,000
(25) 가산세명세	(53) 가산세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자신고세액공제 (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54)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55)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6)			
		기타 (57)			
		합계 (58)			
(78) 면세사업 수입금액	(59) 면세사업 수입금액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사업자미등록등 (59)		1 / 100	
		지연발급등 (60)		1 / 100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61)		5 / 1,000	
		미발급등 (62)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5 / 1,000	
		발급명세전송 미전송 (64)		1 / 100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합계표 지연제출 (66)		3 / 1,000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부불성실 (71)		뒤쪽 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 / 100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미사용 (75)		뒤쪽 참조	
		거래계좌지연입금 (76)		뒤쪽 참조	
		합계 (77)			
(79) 계산서발급 및수취명세	(80) 수입금액제외	업태	종 목	코드번호	금액
		(78)			
		(79)			
		(80) 수입금액제외		(81) 합계	

## 작성 방법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 ~ (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함께하여 적을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40) ~ (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형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해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감)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기상자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순정도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순금액에 관련된 대순세액을 적습니다.
- (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인본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6)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지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무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에 적습니다.
-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7) ~ (6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69) ~ (7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립트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 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10,000 \times 3 \times (\text{경과일수})$ 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78) ~ (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체,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공업사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출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합 계	3	4			148	000	000			13	800	00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1	1		100	000	000			10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1	1		100	000	000			10	000	000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2	3		48	000	000			3	8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2	3		48	000	000			3	800	000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⑯ 세액					비고			
				조	십	억	백	만	천	일	조	십	억	백	만	천	일
1	123-45-xxxxx	국세산업	2		38	000	000			3	800	000					
2	987-65-xxxxx	국세기업	1		10	000	000					0					
3																	
4																	
5																	

⑰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X	② 상호(법인명)	국세공업사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④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종로2가 XXX
⑤ 거래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⑥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수	(9) 공급가액					(10) 세 액						
합 계		3	4	조	십	백	만	천	일	조	십	백	만	천	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2	3			80	000	000				8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2	3			80	000	000				8	000	000	
위 전자 세금계산서 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1	1			50	000	000				5	000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1	1			50	000	000				5	000	000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패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⑯ 과리버호(매인)

—

210mm × 297mm [백사지 80g/m<sup>2</sup>, 또는 중진지 80g/m<sup>2</sup>]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018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국세공업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01 - 01 - xxxx
③ 업태	제조	④ 종목	산업기계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 합계	1	10,000,000	1,000,000	
⑥ 건물 · 구축물				
⑦ 기계장치	1	10,000,000	1,000,000	
⑧ 차량운반구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월 20 일

제출자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 · 구축물 · 기계장비 ·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 구축물 · 기계 및 장비 ·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2018년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앞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공업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김 국 세	101-01-xxxxx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④ 합 계	6	1,500,000	150,000
⑤ 현금영수증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⑦ 사업용 신용카드			
⑧ 그 밖의 신용카드	6	1,500,000	150,000

### 3. 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000-3000-xxxx-xxxx	103-03-xxxxxx	6	1,500,000	15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별지 제16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 × 297mm [백성지 80g/m<sup>2</sup> (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3.1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018년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국세공업사	성명(대표자)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1	10,000,000	1,000,000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합계	1	10,000,000	1,000,000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일련 번호	과세·면세사업등 공통매입		⑫ 총공급가액 등	⑬ 면세공급가액 등	⑭ 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1					
2					
3					
4					
5					
합계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일련 번호	⑯ 총공통매입 세액	⑯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⑯×⑯)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⑰-⑱)
1					
2					
합계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일련 번호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㉑ 경감률[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㉑×㉒×㉓)
1				
2				
합계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이 책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발행일자 : 2018년 12월

발행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5)로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